발 간 등 록 번 호 전북교육 2016-530 

# 2016 本号をかけるしては立て、 さいけるとうはままる。 ていることによりませる。



# 어느 교사의 기도

- 이 해 인

이름을 부르면 한 그루 나무로 걸어오고 사랑해 주면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는 나의 학생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꿈을 꾸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힘든 일 있어도 내가 처음으로 교단에 섰을 때의 떨리는 두려움 설레는 첫 마음을 기억하며 겸손한 자세로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가르치는 일은 더 성실한 배움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지니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내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며 포근히 감싸 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항상 약한 이부터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들의 필요를 민감히 파악하여 도움을 주는 현명한 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충동적인 언행으로 상처를 주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인내의 덕을 키우도록 도와주십시오 학생들의 잘못을 따끔히 나무라고 충고할 줄 알되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얼굴 지식과 지혜를 조화시켜 인품이 향기로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하는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인내하는 사랑의 세월 속에 축복받은 나의 노력이 날마다 새로운 꽃으로 피어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그 꽃자리에 가장 눈부신 보람의 열매 하나 열리는 행복을 기다리며 오늘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 차 Contents

학생인권교육센터 소개 및 업무 안내 / 1

# 1부 학생인권 보호

- 학생인권 상담사례로 공감하는 학교이야기 (이충민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 / 7

# 2부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결과 보고 (오명훈 부안동초등학교 교사) / 51

# 3부 학생자치활동

- 학생자치활동 운영 안내 (이창수 인성건강과 장학사) / 73

# 부 록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113

# 일 정 표

▶ 일 시 : 2016년 10월 20일(목), 21일(금) 15:00~17:30

▶ 장 소 : 전라북도교육청 2층 강당

순	시 간	내 용		
1	14:40 ~ 15:00	등록		
2	15:00 ~ 15:10	국기에 대한 경례 인사말씀 - 이상철(인성건강과장)		
3	15:10 ~ 15:50	학생인권보호 연수 - 학생인권 상담사례로 공감하는 학교이야기 - 이충민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		
4	15:50 ~ 16:00	휴식		
5	16:00 ~ 17:30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 오명훈 (부안동초등학교 교사) 학생자치활동 운영의 실제 - 이창수 (인성건강과 장학사)		
6	17:30 ~	전달사항 및 폐회		

# 학생인권교육센터 소개 및 업무 안내



# 운영 방향

#### 존중과 참여로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



- 인권실천계획
- 학생참여위원회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학생인권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 인권 관련 기관 협력 사업
-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



- 학교 인권교육 지원
- 인권교육 강사단
- 사제동행 인권 동아리
- 인권교육 연구 동아리
- 인권교육 자료 개발
-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 학생자치활동 운영 안내
- 학생회실 설치 지원
-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캠프
-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 보장
- 인권존중의 생활협약 제정 운동
- 학교생활규정 제 개정
- 인권교육 및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 인권옹호관제 운영
- 정책교육 조사구제 행정지원팀 운영
- 인권우호적인 공간 조성
- 센터 내 인권교육
- 학생인권 아카데미
- 학생인권 홍보
- 센터 홈페이지 운영



# 2 <mark>학생인권교육</mark>센터 사명

사명1: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학생들의 삶을 이해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학생인권 보장)

사명2: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교육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교육 공동체 실현에 기여한다. (인권교육)

사명3 :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한다. (학생자치)

사명4: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인권실현의 본보기가 된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 3 업무 담당자 안내

	업무 담당자			El El 22 E			
구분	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 당 업 무			
센터장	인권옹호관		063)237-0350	○ 학생인권교육센터 업무 총괄			
	장학사	이창수	063)237-0351	<ul> <li>○ 인권교육 관련 정책 개발</li> <li>○ 인권교육 업무</li> <li>○ 학생자치활동 업무</li> <li>○ 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 캠프</li> <li>○ 학교생활규정관련 업무</li> <li>○ 학생참여위원회 운영</li> <li>○ 사제동행 인권동아리 운영</li> <li>○ 인권교육 연구동아리 운영</li> <li>○ 인권교육 교재 및 자료 개발</li> <li>○ 센터 홈페이지 관리</li> </ul>			
정 책 교 <del>육</del> 팀	교 사	정옥진	063)237-0352				
	조사관	이충민	063)237-0357	<ul> <li>학생인권 홍보</li> <li>인권실천계획</li> <li>인권실태조사</li> <li>인권모니터링</li> <li>학생인권심의위원회 운영</li> </ul>			
조 사	조사구제 팀장	고형석	063)237-0355	○ 학생인권침해 사안 관련 상담, 조사 및			
구제팀	조사관	김종기	063)237-0356	직권조사 ○ 학생인권침해 관련 시정 및 조치 요구			
행 정 지원팀	주무관	한경훈	063)237-0353	<ul> <li>○ 인권교육 관련 예산·결산 업무</li> <li>○ 학생인권교육센터 행정 업무 지원</li> <li>○ 학생인권교육센터 복무 및 인사</li> <li>○ 학생인권교육센터 시설관리 업무</li> </ul>			

# 4 주소 및 홈페이지

※ 주소 : (우 5487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874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 관련 상담 전화: 063) 237-0356 | FAX: 063) 237-0120

센터 홈페이지 : http://human.jbe.go.kr



# 1부 학생인권 보호



# 학생인권 상담사례로 공감하는 학교이야기

이 충 민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

# I. 학생인권 상담의 의의 및 목적

학생인권 상담은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보호자, 지역 주민 등 교육공동체의 고민거리와 궁금증을 인권우호적인 방법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가 2014년 8월에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상당수의 상담사례가 모였습니다. 학생인권과 관련한 고민거리와 갈등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궁금해 하는 학생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인권보장원칙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안내합니다. 또 갈등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도록 권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이를 통해 상담과정에서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상담과정에 해결이 되지 못하고 사건이나 민원으로 접수되어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절차가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상담내용에 따라서는 엄중히 조사절차에서 다뤄져야 할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갈등관계에 놓인 교육공동체 상호 간에 대화와 이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문제 상황 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하겠습니다.

이처럼 학생인권 상담은 학교에서 발생한 인권문제에 있어서 학교 구성원 상호 간의 완전한 '관계회복'과 모두가 평온한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Ⅱ. 상담사례를 접하기 전 유의사항

상담사례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2장 학생의 인권에서 규정하는 각 조항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상담의 특성상 내담자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므로, 일방의 주장일 뿐 정확히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상담사례 안내는 전라북도 교육공동체 등 많은 사람들이 상담사례를 접함으로써 다양한학생인권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과 진지한 고민을 통해 인권우호적인 정책적 대안과 교육방법들이 제시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리된 사례는 초·중·고등학교의 사례를 i.권리영역별, ii.행위유형별로 구분하였습니다.



# Ⅲ. 상담사례 통계

상담사례는 상담할 때에 내담자가 성명, 학교명,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어, 언급된 항목별로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조례의 권리영역별로 상담수를 세었습니다.

(통계대상: 2014. 11.부터 2016. 6.까지의 상담사례)

조항	권리 구분	쪽	상담수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	3	24
제6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8	7
제7조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	0
제8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10	12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2	137
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	26	2
제11조	휴식을 취할 권리	28	3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29	7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35	8
제14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40	18
제15조	정보에 관한 권리	-	0
제16조	양심·종교의 자유	45	2(양심), 1(종교)
제17조	표현의 자유	47	2
제18조	자치활동의 권리	50	4
제19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0
제2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0
제21조	복지에 관한 권리	52	1
제22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54	3
제23조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	0
제24조	급식에 대한 권리	56	1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	57	6
제26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61	21
제27조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66	3

# Ⅳ. 상담사례 소개

#### 1. 학습에 관한 권리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근거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1[학급변경]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상담을 하시면서, 일반 학급으로 가라고 합니다. 특수 학급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싶고, 어머니도 제가 원하는 학급에서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반을 바꾸라고 하면 꼭 바꿔야 하는지 궁금하고, 원하는 학급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답변 내용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을 위한 학급 배치는 담임선생님이 학생과 보호자와 여러 차례 진지한 상담을 하고, 가능하면 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어느 학급에 배치할 지를 최종 결정 하게 됩니다.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 중 어느 교육 환경이 학생을 위한 최적의 환경인지에 대해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에 대해 담임선생님이 반을 바꾸라고 권유한다고 해서 일반학급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지 않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2[고성·반복민원]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의 보호자가 찾아와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며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보호자 간에 여러 차례 면 담을 했지만, 항의는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 보호자의 반복적인 항의로 교직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답변 내용

반복민원인에 대한 응대지침 등을 참고하여, 민원담당자 등 관계인이 민원인의 흥 분상태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호자의 행위가 정당한 민원제기의 범위를 벗어나,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에 대해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직원이 협조하고, 보호자의 자녀인 학생이학교구성원들로부터 놀림이나 따돌림 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3[전학권유]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한 이후, 심리적인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마음클리닉에서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담임선생님이 아이와 상담을 하면서, '너를 안고 가기 부담스럽다', '너만 계속 지켜볼수 없는 것 아니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라'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이 이러한 말을 하였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화가 납니다.

#### 답변 내용

보호자가 이 일에 대해서 담임선생님과 전화 상담이나 면담을 나눠볼 것을 권유합니다. 일단 학생으로부터 담임선생님의 발언을 전해들은 상황이고, 전학을 가는 문제는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신중하게 의논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담임선생님이 학생과 면담한 내용의 취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학생에게 교육환 경을 바꿔 보는 것에 대해서 의사를 묻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 니다.

보호자의 주장대로 선생님이 발언을 하였다면,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학생이 학교생활에 완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 주는 등 세심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본인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이유로 전학을 종용한 것이되기에,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1-4[수업배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같은 반 친구 두 명이 지각을 하였는데, 선생님이 두 친구에게 지각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4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 하도록 하고, 인성인권부실에서 원고지에 독후감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시(詩와) 명언을 외우도록 하였는데, 외운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하게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답변내용

지각을 자주 한다고 해서, 4일 동안 모든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처분할 수 있는 근 거는 없습니다. 학생의 '지각'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규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절차에 따라서 내려야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의 반복적인 지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행동에 개선이 없는 경우, 강도 높은 처벌로 문제행동을 개선하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지도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수업시간은 학생들이 학습하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시간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진학] 중학교에서 학생선수로 재학 중인 딸의 엄마입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당시 학교 홍보물에는 같은 재단의 고등학교 학생선수로 3명의 학생이 진학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는데,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성적순으로 1명의 학생만 진학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딸이 전공하는 운동부를 둔 학교가 한 곳밖에 없는 상황인데, 입학 당시학교 말을 믿었다가 딸의 진학이 잘못될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 답변 내용

입학 당시,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안내한 사정과 지금의 사정이 달라진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의 입학정원을 3명으로 안내하였다가 1명으로 줄이는 것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입학 당시의 안내를 신뢰한 학생선수와 보호자에게 사전에 그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대응할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학 중인 학교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가 같은 재단이 설립한 학교인 점을 고려하면, 각 학교 해당 업무담당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학생이 진학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1-6[진로] 중학교에서 운동부 선수로 재학 중인 딸의 보호자입니다. 딸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 끝에 선생님에게 '운동을 그만 두고,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더니, '운동을 그만둘 거면 전학을 가라.'라고 말했답니다. 선생님과 면담약속을 정했는데, 면담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답변 내용

학생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진학과 진로에 대해 탐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운동선수로서 학교를 다녔지만, 그운동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학생과 보호자 모두 운동부 감독선생님, 체육선생님,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학생에게 가장 유익한 진로를 모색할 수있어야 합니다.

운동이 신체적으로 힘들고 식사량 관리 등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다 보니, 학생 선수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운동을 쉽게 포기하 지 않도록 다그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학생이 진지하게 자신의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보호자와 함께 담임선생님 등을 만나 면담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2.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생략)

-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2-1[보충수업]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교는 방과 후 수업(보충수업, 5만원) 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야 간자율학습에만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답변 내용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은 종례 이후 시간에 진행되는 교육활동이므로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활동에 학생이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를 강제해서는 안 됩 니다.

또한, 보충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 수업 등은 일정 수준의 비용이 들어가는 교육활동이므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보호자에게 사전에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여,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 단됩니다.

소규모 단위의 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교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독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유하거나 권장하는 행위가 학생이 받아들일 때에 강제로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의 이와 같은 사항이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3.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1[훈련 및 출전기회] 중학교 딸을 둔 보호자입니다. 우리 아이는 운동부에서 학생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 중에는 부모님이 운동부 지도자로 활동하는 학생들이 4명 있는데, 이 학교 코치선생님이 그 4명의 학생과 다른 학생들을 훈련참여 및 게임 배치 등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였고,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를 방문한 이후, 코치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운동이나 열심히 해라. 엄마가 학교 와서 이야기나 하고 다니지 않게 하고'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 답변 내용

코치선생님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선수를 훈련 참여 및 경기 출전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었다면,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운동 종목의 특성 상, 학생이 부상을 당하였거나,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훈련 및 출전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기량향상과 대회 출전에 필요한 경력을쌓는 것에 있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핀잔을 주는 등의 행위는 뒤에 이어지는 '상담 과 조사 청구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학생 선수의 기량과 몸 상태 등 공정한 기준에 따라, 훈련 참여 및 경기 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학교 측에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2[지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점심시간에 친구와 욕을 하며 다퉜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선생님이 친구에게는 아무런 훈계 없이 저만 혼을 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애괴롭히지 말고, 나랑 싸지를 까자.', '주둥이 다물어라.'라고 말하셔서 너무 억울합니다.

#### 답변 내용

선생님이 학생과 학생이 다투는 모습을 보았다면, 일단 어떠한 이유로 다투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더 이상 싸움이 계속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서로 잘못한 행동을 뉘우치고 친구에게 사과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학생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고, 다툰 상대가 보는 앞에서 일방적으로 혼이 난다면, 선생님이 부당하게 차별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학생이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또, '싸지를 까자', '주둥이'이라는 표현이 있었기에, 상담을 나누는 친구의 모욕감은 더욱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해, 서운한 감정을 풀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학생이 보호자와 의논을 해서 함께 선생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 4.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1 언어적 폭력

4-1-1[모욕]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담임선생님이 교실에서 반 학생들이 모두 모여 있는 상황임에도 아들의 '과체중'을 언급하며, 밥을 못 먹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아들이 학교가기를 싫어하고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 답변 내용

초등학교의 점심시간은 '급식교육' 시간으로, 학생들이 예절을 지키며 식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의 연장입니다. 음식을 자신이 먹을 만큼 식판에 담고, 밥과 반찬을 골고루 먹도록 하며, 특이체질이나 질병으로 음식을 가려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지도를 하게 됩니다.

사례는 선생님이 학생의 '과체중'을 개선하려는 지도목적을 가지고, 식사량을 적게 조절하도록 언급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다른 친구들이 함께 있는데, '과체중'에 대한 식이요법 지도를 받으니, 창피함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해와 서운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생과 보호자, 선생님 간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유합니다.



4-1-2[모욕]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엄마입니다. 얼마 전, 아들이 학생회 부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들이 낙담하고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반 학생들이 다 있는 교실에서 아들에게 '너 떨어질 줄 알았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아들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 답변 내용

선생님이 어떠한 이유와 맥락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낙선하여 풀이 죽어 있었고, 장소가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교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생님의 이와 같은 발언은 교육목적의 정당한 지도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낙선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창피함을 느낄 수 있는데, 더욱이 같은 반 학생들이 모두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 피해는 수치스러움에 이를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선생님의 발언은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는 지도방법이라 판단됩니다.

4-1-3[모욕]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같은 반 친구가 수학 수업시간에 칠판에 문제 풀이를 하였는데, 선생님이 풀이과정을 보면서 가르쳐 준대로 안하고 학원에서 배워온 방식으로 푼다며, '돈 지 랄한다'라고 말 하였습니다.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기부 나빠 했습니다.

#### 답변 내용

사례에서 선생님의 발언은,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발언으로써, 교육을 목적으로 한 정당한 지도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돈 지 랄'이라는 말은 '분수에 맞지 않게 아무데나 돈을 함부로 쓰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욕설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학생의 문제풀이 방식이 잘못 되었다면, 잘못된 풀이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1-4[모욕]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공부 안 하면 술집 그런데 밖에 못 간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여학생인데, 이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성적수치심을 느낍니다.

#### 답변 내용

사례에서 선생님의 발언은, 학생들에게 공부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교육목적의 정당한 지도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진학과 진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생님의 발언은 근거 없이 특정 직업과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학생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고 지도 하였을 경우와 비교 하면, 학생들이 느꼈을 모욕감은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발언은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는 지도방법이라 판단됩니다.

4-1-5[욕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교복이 몸에 맞지 않아 입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학년이라 새로 사기에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지는 비슷한 색상의 다른 학교 교복 바지를 구해서 입고 교복 상의는 손에 들고 다닙니다. 등교를 하다가선생님에게 지도를 받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이 새끼 또 안 입고 왔네.', '니네 집은 만원한 장이 없어서 못 사 입냐?'라고 말 하였습니다. 제 사정은 전혀 알아주려 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선생님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 답변 내용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 새끼', '만원 한 장이 없어서' 등의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은, 교육목적의 정당한 지도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학생이 교복착용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여러 차례 지도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지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사전에 그 이유나 사정에 대해서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에서의 학생이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몸에 맞는새 교복을 사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학생의 입장에서 너무나 큰 상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듭니다.

특히,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나 가정사 등 사적인 영역의 확인되지 않은 일을 언급하는 것은 인권침해소지가 큰 위험한 지도방법입니다.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사례와 같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4-1-6[따돌림]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담임선생님이 학급 학생들을 개별 상담하였는데, 상담을 받은 4명의 친구들로부터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친구에게 상담을 하면서, '걔(내담자)는 질이 나쁜 새끼니까 같이 놀지 마라.', '걔처럼 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적이 좋지 않고, 흡연과 학교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그렇다고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에게 저와 어울리지 말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답변 내용

선생님이 학생을 상담하면서,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 등과 어울리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은 교육목적의 정당한 지도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도는 특정 학생에 대한 따돌림을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학생은 따돌림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 따돌림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따돌림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학생이 따돌림을 받고 있거나, 따돌림을 받을 위험이 놓여 있을 경우,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4-1-7[협박]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우유급식 봉사 문제로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유급식 봉사자는 두 명이고, 저는 어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저만 혼을 내셨고 이에 '제가 뭘요?'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교무실로 저를 따라오도록 하였고, 교무실에서 '너 이따위 식으로 하면 취업 안 시킨다.', '이렇게 싸가지 없게 굴면 취업 안 시켜줘'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분 나쁘고 억울합니다.

4-1-8[협박]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교는 흡연자를 찾기 위해서 소변검사를 합니다. 인성인권부 선생님이 전교생을 강당에 모이도록 하고, '소변검사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흡연자로 간주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거나 부모님에게 전화한다.'라고 말합니다. 학생들 대부분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마지못해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근거로 매주 수요일에는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과 흡연 경력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면서 취업,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등을 언급하며, 폭력적인 말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지도하는 것은 교육목적의 정당한 지도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폭력적인 말로 불이익일 줄 것처럼 말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합니다. 생활기록부나 취업실습 관련한 추천서 등은 학생의 진학과 진로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어지고 있 습니다. 때문에, 학생들 중에는 부당한 지도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선생님 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 합니다.

협박을 사용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지도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2 물리적 폭력

4-2-1[체벌-생활지도]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수업 중에 다른 친구의 휴대전화 벨이울렸는데, 선생님이 제 휴대전화가 울린 것으로 오해하셨는지, 제 머리채를 잡아 자리에서일으켜 세우고,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제 것이 아니에요'라고 말하자, '개소리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어이가 없고 억울합니다.

#### 답변 내용

선생님이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교육목적의 정당한 지도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는 선생님이 지도해야할 학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측과 짐작으로 엉뚱한 학생에게 체벌을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판단됩니다.

학생을 지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학생에게 변명이나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례와 같은 착오(잘못 확인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변명이나 해명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사용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학생생활규정 등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정한 약속이므로, 선생님도 규정을 기준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생활규정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거나, 허용된 시간인지에 대해서 착오를 하여, 학생을 체벌하였다면, 학생에게 사과하고 다친 부위를 치료해 주는 등 책임을 다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신뢰가 깨어지거나, 학생이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다는 등의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사과와 대화, 그리고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원 만하게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4-2-2[체벌-생활지도]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우리 딸이 학교 복도를 걸어 가고 있는데, 남학생이 어깨를 때리고 도망갔고, 딸이 도망가는 남학생을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아 당겼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선생님이 우리 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교무실까지 끌고 갔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너도 이렇게 하면 좋겠니?'라며 혼을 내셨다고 합니다. 우리 딸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많은 학생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봤다는 것 때문에 몹시 창피해 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

학생들은 놀이로써 장난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장난이 지나칠 경우,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목격한 선생님이 학생들의 장난에 대해서 적절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에게 변명이나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지도를 받게 되는 경우를 막고,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 자 기행동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선생님의 지도를 교육적인 차원의 것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선생님의 교육적 지도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 생 각됩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이 크게 다칠 정도로 가혹한 체벌을 하는 것은 교육목적의 정당한 지도행위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가지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학생에 대한 지도는 지도사항과 관련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잘못이 커서 그에 대한 처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생생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도해야합니다. 사례와 같이 선생님이 임의대로 손과발, 플라스틱 자로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의 체벌로 학생이 크게 다치고, 괴로워하며 등교를 거부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있는 만큼, 학생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완전한 학교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생님 개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하겠습니다.

4-2-3[체벌-학습]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수행평가 주관식 문제에 답을 쓰지 못한 학생 20여 명의 허벅지와 어깨를 매(나무 재질)로 때렸다고 합니다. 아들의 허벅지와 어깨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인문계에 뭐하러 왔냐?', '예체(예술이나 체육 전공)로 가라', '전학 가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아들은 전학 및 자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수업시간에 졸거나, 출제된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였다는 것 등을 이유로, 선생님이 손이나 매 등으로 학생을 체벌하는 행위는 교육목적의 정당한 지도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례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로서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을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체벌은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배움의 장소입니다.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은 배운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답을 쓰지 못한 경우, 더 많은 관심과 교육적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벌은 신체의 안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신체는 성장과정에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체벌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교육적으로 효과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들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4-2-4[간접체벌]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현재 4학년인 딸은 어렸을 적부터 몸이 허약한 체질이어서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학년 초 담임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몸이 너무 허약하니 각별히 주의하여 돌봐주실 것을 부탁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선생님은 학급에 주어진 일을 한 학생이 못하자, 이를 반 전체 학생들에게 책임을 물어 의자를 들고 있도록 벌을 세웠습니다. 벌을 받은 딸은 그 날 이후부터 아프기 시작했고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소지를 물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

선생님이 신체의 일부나 도구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몸에 직접적으로 체벌하는 것을 직접체벌이라 하고, 사례와 같이 얼차려나 깜지를 쓰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을 체벌하는 것을 간접체벌이라고 편의상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접체벌 역시 체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목적의 정당한 지도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종료되는 직접체벌에 비하여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 이뤄지는 간접체벌의 특성상, 간접체벌을 받는, 학생들의 고통과 부수적인 피해는 직접체벌에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4-2-8의 경우 직접체벌과 반성문 중에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600장의 반성문은 반성을 하도록 지도하는 교육차원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례4-2-9의 경우, 특정 학생의 잘못에 대해서, 같은 학급 학생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벌을 준 것이므로 연대책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외에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지도방법입니다. 또한 사전에 몸이 아프다거나, 다친 학생이 있는지를 살피지 않아, 학생이 크게 다친 경우이므로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벌은 이처럼 한 가지에 그치지 않고, 예측하기 어려운 다수의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5. 안전에 대한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0조(안전에 대한 권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5-1[안전사고]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우리 아이가 교실 미닫이문에 이마를 부딪쳐 열상(벌어진 상처)을 입었습니다. 봉합(10바늘)치료를 받았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장난을 치다가 미닫이문을 발로 찼는데, 마침 교실로 들어오던 우리 아이가 문에 부딪혀 다친 것이었습니다. 중학생이라는 특성상 장난도 많이 하고 정도도 심한데,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 답변 내용

미닫이문은 문 아래에 설치된 바퀴의 굴림으로 열고 닫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하게 차거나 밀었을 경우, 그 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장난으로 사용될경우, 크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닫이문을 발로 차거나 세게 닫지 않도록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정한 속도 이상으로 구르지 않는 특수한 바퀴를 문에 설치하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학생들은 신체활동이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교실과 같은 실내에서도 거친 장난이 나 놀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체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과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5-2[등하굣길 인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교는 정문까지 도로를 따라 한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 길에 인도가 없습니다.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에 차선만 그려져 있고, 차량과 학생들이 지나쳐 갑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다니거나 하면 더 위험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학교 진입로 및 교내 도로의 경우,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없거나, 차도만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운행하는 차량과 이동하는 보행자 사이에 뚜렷한 경계를 두지 않으면, 부딪히거나 바퀴가 사람의 발 위를 지나는 등의 사고가 날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게 되면, 보행자의 시야가 좁아져 차량과의 충돌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겨울철 제설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충돌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인도가 없거나, 인도와 차도 간의 경계 없는 학교의 경우, 관련 예산과 공간을 확보하는 등 이의 개선작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간이 부족하여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경로를 달리하는 보행로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6. 휴식을 취할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6-1[쉬는 시간]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을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동안 부여하지 않고, 조용히 교실에만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도방법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40분의 수업과 10분의 쉬는 시간으로 학교생활이 짜여져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학교마다 특성과 상황에 맞게 중간놀이시간을 두는 학교도 있습니다.

쉬는 시간은 40여 분의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쌓이는 피로감을 푸는 쉬기, 화장실 가기, 물 마시기, 다음 수업 준비하기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 기 때문에 쉬는 시간은 휴식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꼭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수업이 늦게 끝나, 쉬는 시간이 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수업시간의 일부를 쉬는 시간으로 부여하여, 화장실에 다녀오지 못한 등의 사정이 있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에서처럼 하루 내지 일주일씩 반복적·장기적으로 쉬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휴식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 7.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생략)

-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생략)

7-1[두발의 모양·색상, 선도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3학년 선도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두발의 모양 및 색상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두발 색상이 갈색인 학생을 반복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선천적으로 곱슬머리인 학생에게 '곱슬머리를 스트레이트 퍼머를 해서 펴고 와라'라고 말 하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합니다.

학생은 두발의 길이·모양·색상에 대해서 자신의 개성에 따라, 꾸밀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목적상 '생활규정'으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두발과 관련하여 건의나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생활규정을 정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규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잘 지키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규정 개정을 위한 절차에도 맞지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곱슬머리인 학생에게 돈을 들여서 머리카락을 곧게 펴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지도로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학생선도부를 통해 학생들의 두발 및 용모에 대한 생활지도를 하는 것은 선도부 학생과 그 외 학생 간에 다툼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7-2[문신]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학생이 방학 중에 왼팔 상완에서 가슴에 이르는 부위에 '용 문신'을 새기고 왔습니다. 반팔을 입은 상태에서 상완부위의 문신이 노출될 정도로 광범위한 부위에 걸쳐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일이라 판단되어,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지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학생 인권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답변 내용

학생이 신체에 문신을 새기는 것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 용의·복장(개성을 실현할 자유)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생의 개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학교 구성원들이 절차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교무회의 및 학생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혐오스러움의 판단기준은 사회통념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주관적인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만큼, 그 의미가 모호하므로 문신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학생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보입니다.

해당 학생과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학생에게 가장 유익한 해결방안을 찾기를 권유합니다.



7-3[외투 색상, 압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교는 교복 위에 입는 외투(점퍼, 코트 등)의 색상을 검정색과 회색 두 가지로만 한정해서 입도록 하고, 다른 색상의 옷을 입을 경우 압수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선이 되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 답변 내용

겨울에 등·하교할 때에는 방한을 위한 점퍼를 입습니다. 교복 위에 입는 외투를 별도의 교복으로 지정한 학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색상만을 제한하여 검정, 진회색(쥐색), 회색 등의 외투만을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복이 아닌 옷에까지 허용하는 색상의 범위를 정하여, 다른 색상의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허용하지 않은 색상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이를 압수하는 것은 추운 겨울 날씨에 학생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겨울은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등교하고, 늦은 시간에 하교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의 생활을 전제로 할 때에, 어두운 무채색 계열의 검정, 진회색 등의 색상은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등 학생에게 이로운 점보다는 해로운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7-4[교복치마 길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선생님에게 교복치마길이가 짧다고 지도를 받고, 치마를 압수당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치마길이가 짧은데 제 것만 압수를 하니, 짜증나고 학교에 가기가 싫습니다.

#### 답변 내용

학교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학생생활규정'이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에서 교복치마의 길이를 보통 무릎 위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니는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어떠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마의 길이가 '짧다', '적당하다' 등의 평가는 선생님마다 주관적이기에 지도받은 학생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정확한 근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은 한창 성장기에 있는 시기이기에, 입학할 때에는 규정에 맞았던 치마길이가 점점 짧아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치마길이에 대한 지도를 할 때에는 '압수'라는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치마의 여유 단을 이용하여 수선을 하도록 하는 지도방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압수된 교복치마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께 직접 요청하거나, 직접 요청하기가 어렵다면, 담임선생님 또는 부모님과 상의를 해본 후, 도움을 받기를 권유합니다.

#### 8. 사생활의 자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생략)

-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생략)

8-1[CCTV 설치]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교내에 분실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교실 옆 복도 양 쪽 끝 부분에 CCTV 두 대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분실(도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내 복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사례입니다.

학교 내 복도는 통행공간이면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사용하는 생활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도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기록하는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의 보장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학교의 안전 등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사전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설치 이후에는 설치사실을 누구나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관리자를 두어 저장된 기록을 정기적으로 삭제하는 등의 관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분실(도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CCTV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공청회 개회 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8-2[소지품 검사-흡연]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등교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불러 세우더니, 담배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강제로 책가방과 교복 주머니를 뒤지며 소지품 검사를 하였습니다. 담배나 라이터가 나오지 않자 선생님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라'라고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교문 앞에서 소지품 검사를 당하니 너무나 창피하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8-3[소지품 검사-흡연] 고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담임선생님이 수업시간에 3학년 학생 여러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은 흡연 관련하여, '너희들이 의심 된다'라고 말하고, 3학년 학생들에게 우리 반 학생들의 몸과 책상서랍, 책가방을 살펴보게 했고, 담배와 라이터,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소지품 검사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해서 친구의 전화를 빌려 조사관과 통화하는 것이니, 민원 관련하여 추가적인 안내는 집전화로 해주기 바랍니다.

흡연을 하는 학생에 대한 금연지도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연지도의 방법에 있어서, 많은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흡연에 필요한 담배와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생이 스스로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어 놓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적발되면, 그에 따르는 처분이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례8-2와 같이 담배를 피운 것으로 의심이 간다는 이유를 들어, 다수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등굣길 교문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 몸과 책가방을 살펴보는 소지품 검사 는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도방법이 됩니다.

사례8-3도 학생들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한 것으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도방법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담배를 피운 것으로 의심이 가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학급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검사를 하였다는 점, 다른 학생들을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괄검사나 학생들을 동원하는 소지품 검사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소지품 검사를 할 경우에, 검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지품 검사 시 준수사항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생활규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8-4[소지품 검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교는 약 2개월에 한 번씩 소지품 검사와 복장 검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인성인권부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와서, 가방, 책상서랍, 사물함, 청소용품 보관함 등을 수색하고, 화장품과 파우치를 압수하였습니다. 남성 선생님들이 가방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위생용품(생리대 등)이 나와서 창피했습니다. 복장검사를 하는 중에는 남성선생님이 교복치마와 블라우스를 들춰보기도 해서수치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압수당한 물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 답변 내용

앞의 사례를 통해, 소지품 검사를 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사례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가스(화기, 가연성 물질), 흉기 등의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서, 소지품 검사를 해서 압수하지 않으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화장품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화장품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지품 검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검사를 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도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기능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이 아니지만, 색조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또한 스킨과 로션 정도의 기본화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색조'여부를 기준으로 화장품 관련 생활지도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8-5[휴대전화 사용제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2주전에 담임선생님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돌려받고자 선생님을 찾아가니, 한 달 뒤에 돌려주신다고합니다. 학교생활규정에 휴대전화를 등교하면 일괄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요금을 내는데 사용을 못하니 그것도 너무 아깝습니다.

## 답변 내용

우리 조례는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수거 및 압수는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생님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 점심·저녁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는 이에 대해서,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였더니, 쉬는 시간마다 유명 게임을 하는 친구 곁으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소란스럽다.', '학생이 휴대전화를 보고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사고가 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했다.',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유지와 안전보장을 위한 학교의 고민이 깊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 8-6과 같이 휴대전화 압수 후, 한 달 보름(45일), 3개월, 졸업할 때에 반환하여 주는 것은 과도한 처분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강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 법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고 유익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관련해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하고,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서 각학교마다의 상황에 맞게 생활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잘 지키려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 9.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 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비, 급식비 미납 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생략

- ② 생략
-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9-1[출결상황]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칠판에 기재하고,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약 두 시간 동안 기록이되어 있었고, 다른 반 학생들로 쉬는 시간에 오고 가며 출결상황을 구경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질병(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병)으로 병결이 많은 친구들은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 답변 내용

학생들의 결석, 조퇴, 지각, 결과 등 출결에 대한 정보는 학생의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적인 정보를 교실 칠판에 기재하여, 같은 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급의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알리는 방법은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질병으로 병결석, 병조퇴가 많은 해당 학생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나 친구들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없는 이유로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출결상황이 공개되어 심리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출결상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은 시간과 노력이 더 들더라도, 학생의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인별로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9-2[무상우유급식]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기에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를 먹으려고 하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반 친구들에게 '우유 안 먹는데 먹은 사람 누구냐?'라고 말 했는데, 선생님이 '야, 그만 좀 해라. 언제까지 이럴 거냐? 짜증나 죽겠다'라고 하였고, '그럼, 우유 값 환불해 주세요.'라고 하자, '야, 니 돈 주고 먹는 거 아니잖아'라고 말하였습니다. 선생님이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이 황당합니다.

### 답변 내용

우유를 유상으로 먹는지 무상으로 먹는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정보를 관리하는 선생님은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우유급식을 하는 학생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우유 수량이 부족하다면, 급식신청자가 아님에도 우유를 가져간 학생이 있었거나, 혹은 학급별로 우유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였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충분히 알아보고, 우유 수량이 부족한 일이 또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생님이 '야, 니 돈 주고 먹는 거 아니잖아'라고 발언을 하였다면, 학생이 가지는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제사건으로 접수를 해서, 학생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문제제기한 상황이 수업시간이라면, 다른 친구들의 학습권과 선생님의 수업권을 침해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수업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주 장을 과도한 방법으로 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도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9-3[카드식별기]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학생들의 명찰을 제작한 업체에서, 명찰에 설치된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기기를 식생활관 입구에 무상으로 설치하여 준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급식신청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데, 이러한 기기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학생이 급식비를 납부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적인 정보가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카드식별기는 학생이 명찰을 인식기 가까이에 대면, 납부자는 초록불, 미납부자는 빨간불이 들어오거나, 부저 소리가 나서,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거나,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시각적·청각적인 신호로 학생의 급식비 납입여부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표시하는 것이므로, 사적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빨간 등이 들어오거나 부저가 울릴 경우, 해당학생은 급식비를 납입하지 않고 급식을 하려한 학생으로 낙인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식생활관에서 카드식별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9-4[징계처분 공고]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학생들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징계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익명 처리(예:3학년 김○ ○)하여 공고하려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내용

징계처분 결과는 학생의 사적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적인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학생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교육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특정 학생의 징계처분 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지도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사례9-4에서, 선생님이 해당 학생의 성명을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학생들이 사건내용을 듣고, '누구의 이야기'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익명처리를 하여도 누구에 관한 사항인지를 미루어 짐작하거나,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적합한 방법을 찾아 지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0. 양심·종교의 자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0-1[소변검사 동의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금연프로젝트'관련 니코틴 검사를 하는데, 소변검사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싶지 않은데, 선생님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담배를 피운 것으로 간주하고, 부모님에게 전화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 답변 내용

'소지품 검사 동의서'나 '니코틴 검사 동의서'는 모두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지를 묻고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학생은 문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자유로운 생각과 의사와는 상관없이, '동의 한다'에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서명하라고 협박하는 등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소변은 학생의 건강 등과 관련한 다양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소변검사 및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은 검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한 방법이므로, 사전에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10-3[종교수업]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교는 기독교 재단의 미션스쿨인데, 방과 후에 종교수업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교수업을 대신하여 들을 수 있는 다른 수업은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 답변 내용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해당 종교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과목'을 함께 개설 하여야 합니다. 특정 종교과목만을 개설하게 되면, 해당 과목을 수강하고 싶지 않은 학생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수강해야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입학설명회나 입학 후 오리엔테이션 때, 미션스쿨로서 진행하게 되는 종교행사 및 종교과목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학 당시의 신앙과 종교가 달라지는 등 다양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체과목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례는 방과 후 학교 수업으로 종교수업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방과 후 학교 수업은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 학생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11. 표현의 자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규정

제17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사한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생략)

-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생략)



11-1[설문조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기숙사에 입소하려면, 심화보충학습(월 10만원 비용 발생)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생각하여, 일단 제가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심화보충학습을 희망하는지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결과를 분석해 보니, 약 80%의 학생들이 '비희망'의견이었습니다. 설문결과를 담임선생님에게 제시하며 말씀드렸더니, '학생들을 선동하는 것이냐'며 혼을 내셨습니다.

## 답변 내용

생각과 의견(의사)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조례는 다양한 의사표현의 방법 중에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서명과 설문조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시하는 것은 학생으로서 할수 있는 의사표현입니다. 이것을 두고 선생님이 혼을 내고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행위는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도방법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모아진 학생들의 의견은 심화보충수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 님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학생회에 전달하여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제시된 심화보충수업은 정규교과 시 간이 끝난 시간이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 만큼,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절 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1-2[대자보]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학생이 '세월호 참사'관련한 대자보를 작성하여 학교 내에 부착을 하고 싶다고 찾아 왔습니다. 교사로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데, 대자보를 학교 내에 부착하는 것을 승인해 주어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 답변 내용

우리 조례는 학생의 의사표현 수단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의 규정으로 교내 대자보 게시에 대해서 절차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애도를 표하는 내용이라면, 부착의 가부를 판단할 여지없이, 학생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자보에 특정 정당이나, 사람에 대하여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될 위험이 있으므로,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적절한 지도를 하여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2. 자치활동의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학생의 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 2. 학교 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12-1[피선거권] 초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받은 학생에 대해, 학생임원 피선거권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운영하는 것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 답변 내용

우리 조례는 제18조 제3항에서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활동의 구성단 계에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학생이 특정 사안으로 인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학생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생활규정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학생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12-2[간부수련회]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학급의 실장으로 당선되어, 학교에서 가는 간부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선생님에게 간부수련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말씀드렸더니, '간부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실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간부수련회에 일부러 안 가는 것도 아닌데, 실장을 못 하게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학급실장을 선생님이 임의대로 실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간부수련회'가 학생임원을 대상으로 학급회의, 학생회의 등을 진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한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협의를 하는 등 중요한 회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간부수련회 일시가 공교롭게도 개인사정과 맞물려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선생님에게 사유를 알리고, 불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부수련회의 일정이 정규수업시간 외의 시간에 학교의 다른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부득이 참석하지 못 하는 학생임원에게는 회의에서 사용될 자료를 나누어 주어서 참석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학생들이 가지는 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13. 복지에 관한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1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 문화적 사유로 권리실 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정비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 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 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13-1[스쿨버스 이용자 추첨]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스쿨버스 자리에 비해 신청자가 많은 상황이라서, 탑승자를 제비뽑기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비뽑기에서 탈락한 학생은 스쿨버스를 못 타게 되는데, 먼 거리를 통학하는 학생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보다 학생의 입장에서 통학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스쿨버스는 학생들이 등교와 하교 때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스쿨버스는 학교 와 가까운 곳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등 다양한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요 가 많습니다. 따라서, 스쿨버스로 통학하려는 학생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례는 스쿨버스 사업자와 이미 계약한 승차인원이 실제 신청학생의 수보 다 적어서 빚어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스쿨버스 운행은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이나, 시내버스 또는 걸어서 통학하면 통학시간이 상당히 길어져 어려운 사정이 있는 학생들이 통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비뽑기 등과 같이 '우연성'을 전제로 하 는 방법은 신청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사례를 안내 받은 학교 측은, 스쿨버스 노선을 재조정 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자가용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카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고 약속하였습니다.

13-2[스쿨버스, 늦은 종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종례를 늦게 하셔서, 스쿨버스에 타지 못 했습니다. 스쿨버스비를 냈는데 타지도 못하고, 시내버스를 돈 내고 타야했습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답변내용

스쿨버스는 다수의 학생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쿨버스가 출발하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교실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곳까지 이동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종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정해진 시간 보다 늦은 시간에 종례를 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타지 못한 피해를 주었다면, 학생의 복지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지도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스쿨버스를 타지 못함으로써,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하교하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학생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방과 후 학교수업을 듣거나, 학원에서 학습하는 학생의 경우, 학습권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에도 피해를 받게 됩니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동체의 공간인 만큼,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정해진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 등교시간과 하교시간 등 시간약속이 잘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 14.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와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4-1[노후건물]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학교 건물이 오래 돼서 벽면에 금(균열)이심하게 가 있습니다. 안전성이 의심되고 불안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 내용

안전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속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입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학교 건물은 학생과 교직원 등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안전을 담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건물이 안전한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 지에 대해서 등급(A-사용 무방. B-노후화 건물, C-긴급보수 요구, D-사용불가)을 나누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 벽면에 균열이 있다면, 직접 또는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의 벽면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건물의 하중을 지 탱하는 것인지, 단순히 공간과 공간을 나누는 기능을 하는 것인지 등입니다. 학교 내 행정실에 근무하는 주무관님에게 해당 균열 벽면에 대해서 알리고, 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부모님과도 벽면의 균 열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14-2[탈의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는 남학생용 탈의실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학생은 남학생이 빠진 교실을 탈의실로 사용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여학생용 탈의실을 설치해 주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실제 체육시간을 앞두고 남학생들이 탈의실에 가지 않고 교실에서 여학생들과 같이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상 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 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답변 내용

우리 조례는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신체와 관련하여 그 특징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조례도 이러한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화장실 및 탈의실에 있어서, 성 평등이 보장되도록 조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용 탈의실만을 설치하고, 여학생은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도록한 조치는 여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조치로 판단됩니다. 예산이나 공간의 문제를 전제로 하더라도, 탈의실 설치에 있어서 공간과 예산을 균분하여 여학생 탈의실과 남학생 탈의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15. 급식에 대한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규정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급식 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유·초·중·고등학교의 무상 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5-1[급식위생]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교는 외부급식업체를 통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음식에 정체모를 애벌레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벌레 사례 외에도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믿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 답변 내용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로 이루어진 급식을 먹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급식업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음식에서 애벌레 등의 이물질이 반복적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급식 위생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는 정기적으로 급식의 위생상태 및 맛과 질 등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모아진 의견을 반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물질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면, 영양사 선생님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전라북도교육청의 급식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일에 대해서 학부모님에게 알리고 급식의 위생 관리문제가 해결 될 수 있 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16. 건강에 관한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보건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1[흡연] 학교 인근에서 상점을 하는 주민입니다. 학교 밖 공원과 인근 상가의 계단 및 화장실 등에서 학생들의 흡연이 심각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담배꽁초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침을 뱉은 흔적이 많아서 미관상 너무 좋지 않습니다.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간접흡연] 여러 남성선생님이 학교 옥상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연기가 창문을 통해 교실로 들어와서 담배냄새가 많이 납니다. 학교는 금연시설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학교는 학생 및 교직원 등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이용하는 공공건물입니다. 학교 근처의 상가 내 계단과 화장실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공건물에 해당합니다. 학교는 공공건물로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보건을 위하여, 학교 건물 전체와 학교 경계로부터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도 피해를 줍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음에도 담배연기를 마시게 되는 것을 '간접흡연'이라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를 '혐연권'이라 하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를 '흡연권'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권리에 있어서, 혐연권이 더 우선하는 권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흡연행위가 간접흡연 등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등의 피해를 줄 경우,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생은 외형적인 신체와 함께 뇌, 안구, 심장, 간, 폐, 생식기관 등의 중요한 장기가 성장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담배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각 종 유해물질이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해서 TV나 금연교육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라북도 학생금연지원센터 및 각 관할 보건소에서 금연하기 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금연구역인 학교 옥상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6-3[보건실사용]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같은 반 친구가 심장질환이 있어서, 학기 초에 가슴통증으로 주저앉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이 친구가 선생님에게 가슴통증을 이야기 하며 보건실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안 돼'라고 말하며,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반 친구들 여러 명이 '얘가 심장이 약하니까 보내주면 안 돼요?'라고 하였고, 선생님은 '지 랄들 한다.'라고 말 했습니다. 학생이 아프다고 하는데, 보건실에 보내주지 않는 선생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16-4[조퇴신청]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열이 나서, 담임 선생님에게 조퇴를 신청하였는데 허락해 주지 않고, 보건실에도 보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해서, 종합병원에 가서 CT촬영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 '결핵 의심 및 폐렴'으로 진단이 되어, 관할 보건소에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아픈 학생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학생을 위험에 빠뜨린 선생님에게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조치하기를 원합니다.



학생은 몸이 아플 경우, 보건실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고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병원에 가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보통 학생이 아플 경우, 수업중인 선생님에게 보건실에 다녀오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구하거나, 담임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학생이 아픈 부위와 정도에 대해서 말해도, 보건선생님 외에 다른 선생님은 의료나보건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의 긴급성이나 추가될 수 있는 통증 등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심하고, 견디기 힘든 경우에는 보건선생님을 먼저 찾아가 기본적인 치료를 받고, 보건선생님의 의견을 담임선생님에게 전달하여 신속하게 병조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례16-3의 경우는 통증을 느끼는 학생이 직접 선생님에게 허락을 구했고, 주변의학생들도 친구의 기왕증에 대해서 설명하는 등 보건실에 가는 것에 대해서 허락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보건실에 보내주지 않았다면, 학생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선생님, 교실에 있었던 학생들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이 가지는 특이질환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담임선생님과 보건선생님 외에 다른 선생님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이 아프다는 표현을 하였을 때에는 의료 또는 보건 전문가인 보건선생님에게 기본적인 치료와 병원 진료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5[화장실요청]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에게 '장염으로 설사기운이 있습니다.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허락을 구하였습니다. 선생님은 '니 인권만 있냐? 내 인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자리에 돌아가 앉도록 했습니다. 장염으로 병원에 다녀온 진료확인서를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픈 배를 참고 있다가 용변이 나올 것 같아 도저히 참지 못 하고,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그 생각만 하면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학교는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업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청소시간 등을 약속으로 정하고 생활합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학생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장염으로 배가 아픈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맞춰서 화장실에 가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업시간 중이지만, 학생이 화장실에 급히 가야하는 사유를 선생님에게 알리고, 허락을 구했음에도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선생님의 행위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도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학생이 스스로 화장실에 다녀와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만일, 학생이 교실 안에 더 오랜 시간 남아 있었다면, 회복하기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 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장염 등으로 화장실에 다녀오는 일이 급박한 상황에서 선생님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라면, 선생님께 목례를 하거나 옆자리 친구에게 전달을 부탁하고 화장실 에 먼저 다녀와서 이야기 하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17.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규정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 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7-1[소명절차 모욕]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선도위원회에 아버지가 업무상 일정이 맞지 않아 소명기회에 참석을 하지 못 하였는데, 선도위원 중 한 사람이 아버지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포기했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선도위원회의 개최 일시 등을 개최 하루 전에서야 문자로 안내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직장에 연차 신청을 하지 못하여 참석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기에 더 억울합니다.

## 답변 내용

사안에 대한 조사와 선도위원회 회의 등 징계에 관련한 모든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 은 엄격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도위원회 회의 중에 선도위원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를 두고, '포기 했네'라고 말하는 것은 학생과 보호자 모두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을 직접 들은 학생이 느꼈을 인격적인 모욕감은 더욱 컷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선도위원회에 참석하려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시간이 필요한데, 선도위원회 회의 하루 전에서야 개최 일시를 통지받아 참석을 못한것이므로, 사전통지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최일시를 제 때에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와 선도위원의 발언에 대해 인권침 해여부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7-2[이중처벌]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아들이 음주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무혐의로 종결이 났습니다. 학교에서는 음주행위 등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정학 3주 처분을 받았습니다. 3주간의 정학처분이 끝나고 등교를 하였는데, 담임선생님이 '정학 3주간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해 줄 테니, 전학을 갔으면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 보니, 담임선생님의 말에 따라야 하는지 너무나 고민입니다.

## 답변 내용

학생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 3주의 정학 처분을 내렸고, 그 처분의 집행까지 완료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처벌받은 동일한 행동(행위)에 대해서다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중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출결상황이 진학과 진로에 불이익하게 작용될 것 같아, 노심초사이기에 교사 권유에 따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학생은 출결뿐만 아니라, 정학 기간 동안, 수업에 참여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학습권'에 대해서도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또 전학하기로 결정을 하였더라도, 전입 대상 학교장의 승인 여부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학교 측 권유의 조건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생이 혼란을 겪지 않고, 재학중인 학교에 완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생에게 유익한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7-3[연대책임]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의 보호자입니다. 딸이 다니는 학교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중에, '생활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생활복을 착용하고 등교를 하거나하교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적발된 학생이 소속된 반 전체 학생들에게 며칠 간 생활복을 입지 못하도록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잘못한 일을 이유로 다른 학생들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

잘못을 한 학생이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해당 학생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대책임'입니다. 연대책임은 특정 학생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일정 범위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함께 책임을 지도록 처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 같은 학급의 학생 모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를 침해한 지도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연대책임을 묻는 지도방법은 잘못을 한 학생과 함께 처벌받은 다른 학생들 간에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17-4[임의처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같은 반 여학생을 때렸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학교생활규정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여학생의 보호자가 우리 아이를 두 차례에 걸쳐 직접 상담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이는 이 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

학생이 잘못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학교생활규정 등 규정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정해서 실행한 선생님의 지도방법은 학생의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해 적절한 상담으로 행동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면, 학생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상담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 18.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④ 인권옹호관 및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청구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1[신고자 찾기] 센터에 신고한 고등학생입니다. 신고한 사안으로 조사관이 학교에 다녀간 이후,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일을 신고했다.'는 등의 말을 하고, 반 친구들도 '영웅 심리에 쩔어서 그래요.'라고 대답하는 등 학교 전체적으로 신고자에 대해서 나쁜 말을 많이 하고, 누구인지 찾아내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니, 학교에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18-2[신고자 찾기] 센터에 신고한 고등학생입니다. 1시간 전에 센터에 신고를 하였는데, 선생님이 방송으로 저를 포함하여 친한 친구들을 교무실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에게 가니, '누가 신고했는지 빨리 자수해라.'라고 하면서, 신고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 답변 내용

학생은 신고를 하게 되면, 혹시 선생님이 알게 되어 혼을 내지는 않을지, 수행평가나 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신고자의 성명을 비롯한 인적사항은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학생을 찾거나, 비난하는 행위가 있게 되면, 학생이 심리적으로 불안해 지고,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상담과 조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 고한 학생을 찾으려 하는 선생님의 행위는 학생의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을 침해한 행 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전화하여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상담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장소와 상황에서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2부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 학교생활규정 개정



오 명 훈 (부안동초등학교 교사)

## 1. 학칙과 생활규정과의 관계





## 2. 학생생활규정? 학교생활규정!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의 생활을 규정하는 제한적이고 권리침해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바 교육공동체의 상호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야할 내용을 적시한다는 측면에서 학교생활규정으로 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역 구 성 핰 • 심의 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 제 .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구성하며, 인권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 규정안 검토, 의견수렴(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방법 결정 • 심의 위원회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8인 이 •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 규정안 확정 은 학생, 학부모, 교원대표로 구성하며 (인 •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 및 홍보 권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포함 • 기타 학교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가능), 학생의 비율은 40% 이상으로 구성한다.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결정 •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 학교 구성원의 학교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 심의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초등 학생생활규정 체크리스트

영 역	살펴 볼 내용			
개정일 및 규정 공개	1. 학교생활규정 개정일이 언제인가?			
	2. 학교생활규정이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되어 있는가?			
규정개정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	1.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규정이 있는가?			
	3. 규정개정 절차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체벌과 교육적	1.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가?			
조치	2.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방과 후 학습 선택권 부여	1. 방과 후 학습에 대한 학생선택권이 부여되는 규정이 있는가?			
용의복장	1. 복장, 두발, 양말, 스타킹, 신발, 외투, 액세서리, 화장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가?			
사생활의 자유	1. 수업도중 휴대폰을 압수하여 장기 보관하는 규정이 있는가?			
	2. 학생의 휴대전화기, 전자기기를 걷는 규정이 있는가?			
	3. 학생의 동의하에 소지품을 검사하는 규정이 있는가?			
	4. 교사가 일기장 검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가?			
양심의 자유	1. 학생의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가?			
학생자치활동	1. 학생회 임원 입후보시, 징계여부, 성적, 학년, 품행에 따라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는가?			
	2. 학생투표가 아닌 교사 등이 임원을 임명하는 규정이 있는가?			
	3. 학생회 임원 입후보시 과도한 학생 추천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는가? (학생 추천 20명 이상 등)			
	4. 학급 임원 및 학생회 임원이 직무 수행 중 징계를 받을 시에 자격이 박탈 된다는 규정이 있는가?			
양성평등	1. 생리공결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가?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가?			
	2. 학교 게시판(학교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사용할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통제를 받는 규정이 있는가?			
징계, 상벌 규정	1. 학교폭력이 아닌 학생 징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가?			
	2.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규정이 있는가?			



## ○○초등학교 생활규정

제정 2000. 00. 00 제 차 개정 2011. 00. 00 제 차 개정 2016. 00. 00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교육공동체 서로가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 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8조, 제17조,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4항, 제31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3781호)」에 의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존중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규칙을 민주적 절차로 제정하고 교육적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1)

-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9. 학칙개정절차
-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5. 퇴학처분
-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sup>1)</sup>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등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30조 및 제31조, 제 32조2)에 의거하여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령 및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범위 안에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통하여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제한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민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3)

#### 제5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 ① 학생들의 생활교육과 관련 징계 사항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인성인권부장, 학생상담부장, 교무기획부장, 각 학년부장, 학부모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되, 인성인권인권부장을 간사로 한다.4)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기능】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심의 사안과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학생·학부모는 통보 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 가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sup>2)</sup>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30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자의 권리와 교육) ②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하며,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sup>3) &</sup>quot;징계위원회"로 명칭을 정하여도 무방하나, 징계도 교육의 일부로 보아 "생활교육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하는 것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sup>4)</sup> 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정수는 법령에 정해진 바는 없고 학교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3장 학생생활

## 제1절 교내생활

제7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기르고, 기본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타인을 배려하고 교사의 수업권 및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고,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 ⑦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sup>5)</sup>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제8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sup>5)</sup>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 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 제9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야 한다.
- ③ 수업시간 이외에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 제10조【학습에 관한 권리】6)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7)

-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직원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 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학생은 보충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 제12조【휴식을 취할 권리】8)

-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sup>6)</sup> 전북학생인권조례 제5조에 근거

<sup>7)</sup> 전북학생인권조례 제6조에 근거.

<sup>8)</sup>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1조에 근거.



## 제13조【사적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 제14조[용모]9)

- ① 용의복장에 대한 일괄규제는 하지 않고,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 ② 두발은 제한을 두지 않고 단정하고 자유로운 모양으로 한다.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제15조【사생활의 자유】10)

- ①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한다.
-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sup>11)</sup>
-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안 된다. (단 사적기록물에 대한 검사행위가 아니라 인성교육이나 글쓰기 교육 차원에서 선생님과 대화 글쓰기, 독서 감상문 쓰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12)

<sup>9)</sup>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의거 복장, 두발의 길이 - 모양 - 색상 등 용모에 관한 인간으로서의 권리(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에게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목적상 이를 제한하고 자 할 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sup>10)</sup>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3조에 근거,

<sup>11)</sup> 학교에 cctv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그 장소 또한 제한적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2012년 권고를 통해 "교실 내 CCTV 설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CCTV로 인하여 교실 내에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모든 행동이 모두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프리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교사들의 수업권 및 교육의 자주성 저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탈의실이 없어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신체가 노출되므로 교실 내 CCTV를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sup>12) 2005</sup>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관행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아동이 사생활의 내용을 침해 받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사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검사·평가 받을 것을 전제로 일기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또한 일기장 검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다른 방법이 가능하므로 그 개선을 권고한다."

## 제16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13)

-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14)
- ③ 학교의 장은 교육비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7조【정보에 관한 권리】15)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18조【양심·종교의 자유】16)

-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17)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9조 (표현의 자유) 18)

-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sup>13)</sup>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 근거.

<sup>14)</sup> 국가인권위회는 "학교 밖에서까지 (고정식) 명찰을 달고 다니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탈부착식 이름표 보급 등 대안을 마련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sup>15)</sup>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5조에 근거.

<sup>16)</sup>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6조에 근거.

<sup>17)</sup> 이것은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아예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반성과 약속의 의미로 학생에게 권고하고 교육 적 지도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증표로 반성문 과 서약서를 강요하는 양심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sup>18)</sup>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7조에 근거.



## 제20조【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에게 임장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 1. 전체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2.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 3.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4. 휴일에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거나 활동하고자 할 때

제22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다.

-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제2절 교외생활

제23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계발에 힘써야 한다.
- ③ 학생은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외부 단체 주관 행사 및 대회에 소속 학교의 이름을 걸고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공중도덕과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등 유해성 약물(본드, 가스흡입)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4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 (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 ④ 학생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시

## 제3절 정보통신

제25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26조【통신기기 관리19】교내에서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이 휴대전화, 휴대용 컴퓨터(PDA) 등 전자기기를 학교에 가져 올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sup>19)</sup>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3조④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전자기기의 사용에 대해 제한과 강제보다는 학생에게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의 사용예절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학생 스스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이의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더 바람하다는 것이다. 학교에 따라 등교 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하교 시 되돌려주는 방식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나 사적소유물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헌법 제 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강제적 금지와 제한보다는 수업에 방해를 주거나 정해진 규칙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경우 제출을 요구하고 일정시간 압수하여 하교 시 돌려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수차례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학교규정으로 정하여 일정기간 압수하는 규정을 삽입할 수 있다.

<sup>\*\*</sup> 휴대폰 보관 후 분실 시 학교에서는 우선 분실신고를 한 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하면 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접수받은 후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적정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부)

학교 관리 중 분실된 휴대폰 등 보상 지원계획 안내(인성건강과-35456 2013.12.17.)

<sup>\*\*</sup> 일부 학교에서 학교규칙에서 학생들의 학교 내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한 벌칙으로 전자기기를 학교가 상당 기일 동안 일시 수거하는 사례가 있음.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전자기기를 휴대하지 못해 안전과 관련된 긴급 상황 시 구조 요청 등을 할 수 없는 등 안전이 우려됨.

학교규칙 운영 및 제•개정 운영 안내(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2919 2014.5.19.)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수업 중에 학생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교육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교사의 교육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④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제4장 학생교육

## 제1절 생활교육

제26조【체벌금지】20) 학교에서 체벌(體罰)의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sup>20)</sup> 체벌금지조항과 교사의 권한 및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에 관한 항목을 반드시 삽입할 것을 권고하며,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의 준거가 되기도 하며 최소한의 학생지도의 기준선을 명시한다는 의미가 크다.

<sup>※</sup> 체벌 금지관련 근거

<sup>「</sup>대한민국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sup>「</sup>대한민국 헌법」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sup>「</sup>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sup>\</sup>textcircled{8}$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 정 2011.3.18.>

<sup>「</sup>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sup>「</sup>아동복지법」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sup>&</sup>lt;신설 2015.3.27. 시행 2015. 9. 28>

<sup>「</sup>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제27조 【교사의 권한】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2. 교육환경 조성
- 3. 시정 요구
-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 제28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4.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교육
  - 5.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7.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 제5장 징 계

**제30조【징계원칙】**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등)<sup>21)</sup>에 의한 징계 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sup>21)</sup>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31조【징계의 심의】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재심의 부의】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있다.

## 제33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훈육과 훈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 봉사 : ○○일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사회봉사 : ○○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 : 학교 폭력 또는 교사의 교육에 불응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중대한 교칙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생활교육위원회 협의를 거쳐 출석정지(등교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한다.
- 5. 훈계, 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제34조【징계의 방법】

- 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생인권부 생활담당 교사의 교육을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 ③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 ④ "출석정지"가 10일 이상일 경우 전학을 권고하고,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명시) 동안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35조【징계시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1. 학교환경 미화작업
  - 2. 교사들의 업무보조
  - 3. 교내도서관 도서.교재.교구 정비
  - 4. 인성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진행

#### ② 사회봉사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③ 특별교육 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 거 명시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등교정지) : 출석정지로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할 경우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 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 제36조【징계내용 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
- 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
- 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 제37조【심의 확정 및 재심요구】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
- 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

제38조【징계경감 및 해제】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39조【징계의 기준】징계의 기준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장 규정의 개정

#### 제40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교육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0%<sup>22)</sup>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sup>22)</sup> 전라북도교육청 권장사항이며 민주적 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한 최소조건이다.

#### 제41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42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43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유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유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③ 학생회 규정의 개정은 학생회 정기 회의에서 개정한다.

제44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초 학생회 규정

제1조【회원】학생회<sup>23)</sup>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제2조【권리 및 의무】

- ① 학생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24)에 의거해 자치활동의 권리를 갖는다.
- ②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③ 학생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19조<sup>25)</sup>에 의거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은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회가 학생과 관련된 행사에 대하여 예산 편성 운영권을 보장한다.

### 제3조【학생회의 운영】26)

- ① 본교 학생회의 운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학생회는 학교생활의 제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게 한다.
  - 2. 학생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의사 결정 과정을 체득하여 민주적 생활 태도를 기른다.
- ② 학생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하고 운영한다.
  - 1. 정기회의는 매월 4주 금요일 6교시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단의 소집에 의하여 개최한다.
  - 2. 회의 내용은 학교생활에 관한 제반 문제로 하되, 각 학급임원은 자기 반 급우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 3. 회의는 민주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4.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sup>23) &</sup>quot;어린이회"라는 명칭은 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제한적인 용어보다는 초중등 공히 "학생회"라는 명칭으로 개정하여 '배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확장적 의미로 개정하는 것을 권고함.

<sup>24)</sup>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sup>25)</sup>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 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sup>26)</sup> 학생회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생활규정에 담을 수도 있고, 별도로 학생회운영규정을 둘 수도 있다.

- 5. 학생회장은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6.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운영이나 기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학교장은 학생회 임원에 협의를 요청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학급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급별로 학급회를 조직한다.

- 1. 학급회의 조직은 매 학기 초(3월, 9월)에 조직한다.
- 2. 학급회 임원선출은 학급별로 직접,보통,평등,비밀선거에 의하여 회장1명, 부회장 2명 (남여 각 1명)을 선출한다.
- 3.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정하며 단임제로 한다.(단 부회장은 다음 학기에 회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으며, 회장은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음)

제5조【학생회】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당해 학기에 선출된 학급 정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1. 학생회는 매 학기 초(3월, 9월)에 조직<sup>27)</sup>한다.
- 2. 학생회 대의원회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급회임원으로 구성한다.
- 3. 회장단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5학년, 6학년 각 1명)으로 구성한다.
- 4.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정하며 단임제로 한다.(단 부회장은 다음 학기에 회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으며, 회장은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음)
- 5. 회장단 입후보자는 6학년으로 하고, 부회장단은 5-6학년으로 한다.
- 6. 회장(1명)은 학생회 대표로서 집행부를 구성하고 대의원회의를 주관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둔다.

- 1. 학생회 및 학급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2. 학교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 및 학급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학급위원회"라 한다)는 선거일 공고일 까지 구성한다.
- 3. 학교위원회의 위원은 5,6학년 학급당 2명씩 각 학급에서 선출하고 학급위원은 학급당 4명으로 한다.
- 4. 위원의 임기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로 한다.
- 5. 학교위원회는 학교위원회 위원명단을 선거일공고일에 공고하여야한다.
- 6. 각급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전교 및 학급임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sup>27)</sup> 학생회 선거를 2학기 말에 실시(10월~12월)할 경우 회장은 5학년 부회장은 5학년 1명, 4학년 1명, 선거권 은 3학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7. 학교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투표자 명부 작성 및 투표에 관한 일은 학급 위원회가 담당한다.
  - 가. 투표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 나.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 다.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일
  - 라.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 마.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 바.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 8. 각급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선거일 공고】**선거일은 교직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하 "선거권자"라 한다)은 선거 공고일 현재 4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한다.

제9조【입후보 자격】 임원에 입후보하는 학생은 회장은 6학년에, 부회장은 6학년 및 5학년에 재학하여야 한다.

# 3부 학생자치활동



## 초등 학생자치활동 실태 및 안내



5 학생인권교육센터

## I.학생자치 관련 실태

1. 학생자치 관련 실태 (2015년도)

	ス사	조사 편성		예산편성	생활협약	학생자치법정	
학교 급	학교수	시간	학생회실	운영권부여	제정	실시학교	평균법정 개최횟수
초등학교	417	12.6	54(13%)	139(33%)	163(39%)	29(7%)	2.8
중학교	208	10.8	106(51%)	128(62%)	74(36%)	32(15%)	1.8
고등학교	127	15.6	102(80%)	80(63%)	30(24%)	30(24%)	1.8
특수학교	10	15	0	5(50%)	5(50%)	0	0
총계	762	13.5	262(34%)	352(46%)	272(36%)	91(12%)	2.1

## 2. 문제점과 개선방안

ह० हा	문제점	개선 방안
학 생 자 치	<ul> <li>학생자치활동의 시간 확보 어려움이 있음</li> <li>학생회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원 및 관심 부족, 지나친 간섭으로 학생 중심의 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음</li> <li>학생회에 '학생자치활동 관련 예산 편성 운영권' 을 부여하는 비율이 낮음(46.8%)</li> <li>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학생들의 공간인'학생회실' 운영 학교가 부족함(초등 13%, 중등 45%)</li> <li>교사 주도의 학생자치법정 운영으로 학생 간 위화감 조성 및 상벌점제 존속</li> </ul>	<ul> <li>학생자치활동 편성 시간(초·중등 10시간, 고등 17시간), 학생회실 공간 구성 권장 및 학생 관련 행사에 대한 예산 편성 운영권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li> <li>초·중등 학교급별 학생자치활동 매뉴얼 개발 및 보급으로 우수사례 제시</li> <li>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 캠프 시 학교 간 우수활동 공유</li> <li>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민주적인 논의를 거친 인권존중의 생활협약 제정 안내</li> <li>학생 자율에 맡기는 학생자치법정 운영 (교사는 지원자)</li> </ul>
학교생활규정	<ul> <li>학교생활규정에 대하여 학교 구성원이 무관심한 경우가 있음(인성인권 담당교사가 전담)</li> <li>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이 저조(44%)하며, 학생인권조례에 맞는 생활규정 개정 절차를 따르지않은 경우가 있음</li> <li>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낮아, 학교생활규정이 인권조례의 보장 내용보다 후퇴하는 경향이 있음</li> </ul>	<ul> <li>학교생활규정에 남아 있는 학생인권침해 요소들은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인권조례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 하도록 지속적인 안내(연수, 워크숍, 컨설팅</li> <li>상벌점제 폐지에 따른 대안 모색</li> <li>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과정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학교현장에 제시</li> </ul>



## Ⅱ.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정책

#### 1. 목적과 근거

## 목적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참여와 자치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이를 실현
- 학생 스스로 학교의 주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자치 역량 강화 지원
-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다양한 경험의 기회 제공
-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근거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 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⑦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 바 학교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 ④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 2.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정책

#### 가. 학생회실 설치 지원 사업

- 중.고등학교 대상 38교 지원(연간 500만원)
- 2016년까지 158개교 지원
- 설치지원 학교 담당자(교감, 인권담당) 워크숍 및 컨설팅 (4월)

#### 나. 학생자치활동 운영

- 초.중 10시간, 고 17시간 이상 운영 권장
- 학생자치활동 예산 표준기본운영비 1%이상 편성 권장
- 학생회에 예산.편성 운영권 보장
  - 학교축제, 어린이날, 학생의 날, 스승의 날, 학생인권의 날 행사와 관련된 예산은 학생회에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

## 다. 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 캠프

• 초.중학교 : 학생회 임원 대상, 14개 지역교육지원청 주관

• 고등학교 : 학생회 임원 대상, 도교육청 주관 (1박 2일)

•캠프내용: 임원진 대상 인권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활성화 방안 토론,

임원들간의 정책 공유, 학생회 주관 행사기획의 실제 등

• 지역교육지원청별 학생자치활동(지역별 학생회장단 모임 등) 사업 지원

## 라.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학생,교직원,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생활협약 제정 운동 전개

• 장수초등학교

교사 3행	학생 3행	학부모 3행
<ul> <li>준비된 수업을 하겠습니다.</li> <li>부모 같은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li> <li>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는 눈을 마주치겠습니다.</li> </ul>	<ul> <li>선생님 말씀에 경청하겠습니다.</li> <li>부모님, 선생님, 친구에게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되겠습니다.</li> <li>친구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li> </ul>	<ul> <li>아이와 하루 10분 이상 마주보며 이야기하겠습니다.</li> <li>아이의 성적보다 마음을 보는부모가 되겠습니다.</li> <li>남보다 잘 하라는 말보다 함께어울려 하자는 말을 자주하는부모가 되겠습니다.</li> </ul>

• 전주신일중학교

교사 실천 약속	학생 실천 약속	학부모 실천 약속
<ul> <li>학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li> <li>학생의 단점보다 가능성을 먼저 보고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li> <li>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겠습니다.</li> </ul>	<ul> <li>친구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다.</li> <li>선생님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고 예의를 지키겠습니다.</li> <li>학교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 하겠습니다.</li> </ul>	<ul> <li>따뜻한 말로 인사하기, 안아주기 등 자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li> <li>아이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로 대화하겠습니다.</li> <li>하루에 한 번 이상 칭찬하겠습니다.</li> </ul>

#### 마. 학교생활규정 개정 및 컨설팅

- 규정개정심의위원회(학생 참여 40% 이상)를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 컨설팅 신청 학교 대상 인권교육, 학생자치활동, 학교생활규정 관련 컨설팅 실시
- 내용
  - 학교생활규정 : 학교생활규정 인권침해 여부, 규정개정의 절차 등
  - 인권교육 : 인권교육 시간 및 방법 등
  - 학생자치활동 : 시간, 운영 방안, 우수 사례 안내 등



#### 라.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 구성 : 지역교육지원청 별 공개모집 40명, 소수자 의견 반영을 위하여 별도 절차를 거쳐 선발된 10명(총 50명)
- 임기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1년)
- 역할
  - 의견 제출 : 조례 개정, 학생인권실태조사, 학생인권실천계획 등)
  -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참여를 위한 필요한 사항 협의 및 의견 제출
- 운영
- 출범식, 정기회의, 워크숍, 해단식
- 임원 : 대표 1인, 부대표 3인(초•중•고 각 1인), 지역대표 4인

#### 마. 학생인권 보호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연수

- 대상 : 도내 초·중·고 교감 및 학생인권 담당 교사 1500명 시기 : 10월
- 내용 : 학생인권 증진, 학생인권 침해 사례, 학생자치활동 운영 실제 인권존중의 학교생활규정 제 • 개정 안내

#### 바. 기타

- 초등 학생자치활동 매뉴얼 개발 보급
  - 선거, 학급회, 회의순서, 임원진 연수, 대의원회의, 학교생활규정, 학생자치법정 등
- 사제동행 인권동아리 : 인권, 자치, 평화, 노동인권 관련 인권체험활동 운영(초등 15팀)
- 인권교육 연구동아리 : 인권 및 자치활동 수업 안 개발 및 탑재(초등 2팀)
- 도내 고등학교(133교) 대상 노동인권교육 강사비 지원

## 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영	역	내 용
학생 자치활동 방해요소•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통제 •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 교사가 가지고 있는 • 낮은 인권감수성과		
	학 생 회	•학급회의 활성화 •민주적인 선거문화 •내실 있는 임원진 연수를 통한 역량강화(1년 계획 작성) •인권과 자치가 보장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참여(학생 의견 수렴) •학교장 간담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참관) •학생회 활동의 홍보 강화 •학생회 선배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인수 인계 •지역교육지원청 주최 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캠프 참여 •지역별 학생회 연합회 참여를 통한 연대 및 공유
활 성 화 방 안	학교 의 지 원	•학생의 참여 및 자기결정권 보장(의결사항 최대한 존중) •학생자치활동 시간, 공간(학생회실), 예산 편성 •학생회예산 지원(선거공약, 여론수렴 결과, 각종 회의와 모임) •학교생활규정 학생회 활동 보장 •학생회 지도교사를 학생회가 위촉 •민주적이고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 •다양한 교육과정 영역에서의 학생자치활동 경험 •학생 관련 행사 학생회 주관 운영 •관리자의 교육철학, 교직원(담당 교사의 추진력), 학부모의 지원 •자발적인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다양한 교육과정 영역에서의 학생자치활동 경험 •학생 관련 행사 학생회 주관 운영 •라라자의 교육철학, 교직원(담당 교사의 추진력), 학부모의 지원 •학생 관련 행사 학생회 주관 운영 •관리자의 교육철학, 교직원(담당 교사의 추진력), 학부모의 지원



## 초등 학생자치활동의 실제



🐧 학생인권교육센터

## I. 학급 자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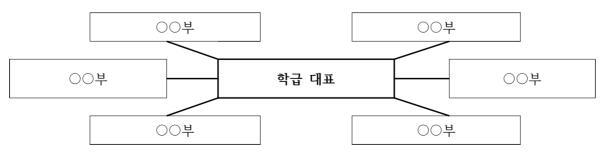
## 1. 의미와 역할

영역	내용
의미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학급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와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는 학급 단위의 학생활동
역할	• 학급회의를 통한 자신들의 문제 해결 • 학급규칙 만들기 • 테마가 있는 학급활동 협의 • 학급회의 결과 학생회에 전달 • 학급 학생의 의견이 학교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 2. 학급회 영역

활동 영역	활동 내용
학급회의 개최	• 월 1회 이상 학급자치회 편성 운영 권장
1인1역 활동	• 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발휘 •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배움
학급규칙 만들기	• 학생들의 함께 의논하여 학급규칙 제•개정하기
학급특색 활동	주제에 따른 계획을 세워 실천하기      학급 특색 활동하기

## 3. 학급회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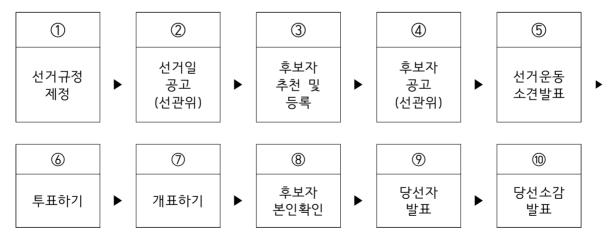


#### 학급 부서 예시

- 학생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봉사활동의 개념)의 부서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서를 학생들과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좋다.
  - \* 놀이부(문화부): 중간놀이 시간 프로그램 만들기, 노래나 놀이의 소개, 현장학습 오락 준비, 문화행사 준비(전시회, 발표회, 합창대회 등)
  - \* 튼튼부(체육부): 학급체육대회 담당, 친구들 건강관리, 아픈 친구 보살피기, 학교 체육행사 준비
  - \* 책사랑부(도서부): 좋은 도서목록 소개, 학급문고 관리, 독후감 수집 . 발표
  - \* 꾸미기부: 환경 게시물 관리 및 보수, 교실환경 점검 등 학급 환경 가꾸기
  - \* 재배부: 교과와 관련되거나 재배가 쉬운 식물을 심고 기르기, 화분 관리
  - \* 친구사랑부: 친구들의 생일 축하, 우정편지 전달, 친구 고민 나누기 등
- ☞ 부서별로 자리배치(모둠구성)를 하여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좋다.

## 4. 학급회 선거

- 학급선거관리위원회: 6명 내외
  - 위원장(1명), 투표관리(2명), 기표 및 집계(2명)등
- 학급회 임원(정·부회장)
  - 선출 :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 학급회 임원의 임기: 학생회 규정에 따름
- 학급임원 선거 절차(예시)



\* 학급임원 선거는 학급의 구성원들간의 합의를 통해 간소하게 진행되기도 하며 학급 상황에 따라그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2016년

## 3 월

월	회	수	목	급	토
	1 3.1절	2	3	4 학급선거관리위원회 구성	5
7 <학급산	<b>8</b> 크거규정제정→	9	10 선거일 공고, 후보자 등록	11	12
14	15 후보자 공고	16 및 선거운동	17	18 → 후보자 소견발표	19
21 투표 및 개표, 당선자 발표	22 ←	23 <sup>박신청</sup> →	24	25	26
28	29	30	31		
	7 <학급선 14 ← 	7 8 <학급선거규정제정	1 3.1절 2  7 8 9  <학급선거규정제정	1 3.1절 2 3  7 8 9 10  <학급선거규정제정선거일 공고, 후보자 등록  14 15 16 17	1 3.1절 2 3 4 학급선거관리위원회 7 8 9 10 11 <학급선거규정제정

## 5. 학급회의

## • 회의 순서

과정	회의 예시
개회선언	지금부터 제()회 학급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제안 (의장)	오늘 회의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장소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안 및 이유 설명	[제안자1] 제가 우리반 단톡방에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많은 친구들이 ○○○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자2] 저는 학급 홈페이지에 있는 투표 기능을 사용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총 20명이 투표하였는데 12명의 친구들이 ☆☆☆에 투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자3] 저는 친구들에게 희망하는 현장체험학습 장소를 뒷 게시판에 포스트잇으로 붙이라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으로 갔으면 합니다.  ※ 학급회에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사전에 학급 친구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타당한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응답	[질의]제안자분들이 각각 장소를 말씀해주셨는데, 현장체험학습은 우리 돈을 내고 가는 만큼 각 장소에 가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안자 응답] ○○○은 각자 시내버스를 타고 모여도 되는 곳으로 교통비는 필요 없고, 입장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이하 생략>
의제 결정	각 제안자들의 현장체험학습 장소에 대한 의견과 그 의견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현장체험학습 장소에 대하여 잘 생각하신 후 표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기타토의	위 안건 이외에 기타 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선언	이것으로 제()회 학급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학급 회의 참여 태도

ଷ୍ଟ	내용
말할 때 주의할 점	요점을 똑똑히 말한다.      바른 자세로 상대를 보며 말한다.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말한다.
역할	•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는다. • 중요한 내용을 적어 가며 듣는다. • 자기의 생각과 비교하며 듣는다. •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듣는다.
제안 할 때의 요령	<ul> <li>제안한 의견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분명히 인식시킨다.</li> <li>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제시하면서 새 의견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설명한다.</li> <li>자신의 제안이 채택, 실행되면 어떤 점이 어떻게 개선되리라고 예상되는지 설명한다.</li> <li>제안한 의견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까지 설명한다.</li> </ul>
상호 <del>존중을</del> 위한 회의 태도	<ul> <li>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참석한다.</li> <li>다른 사람에게 실례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삼간다.</li> <li>남의 사생활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li> <li>적극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참여한다.</li> </ul>
교사의 역할 / 유의점	<ul> <li>회의 진행시 학생들의 불분명한 발언에 대해 친절한 안내자가 된다.</li> <li>회의 진행시, 교사도 발언권을 얻어 발언한다. 이 때, 학급운영의 원리, 인권평화적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발언한다.</li> <li>회의 진행시 교사의 좌석은 학생들 자리로 이동한다. 교사의 자리는 서기의 자리로 이용한다.</li> <li>논의 결과를 교사의 권위로 절대 뒤집지 않고, 함께 방법을 강구하고 함께 실천한다.</li> </ul>

## 6. 운영 사례

## • 학급회의록

일자	2016년 ○○월 ○○	일 ○요일	회의 장소	교실			
출석 인원	회장(반장)	부회장	서기	회의 시간			
<b>○○명</b>	000	000	000	15:00~16:00			
안건명	◇ 학급의 날 운영	내용 결정하기					
제안 설명		모하고 협동심을 기르며 하루가 되도록 계획하		소속감과 책임감을			
토의 내용	인식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계획하고 운영하기  1. 학급의 날 운영에 대한 찬반 〈찬성의견-28명〉 - 친구들과 친해지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음 -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음  2. 학급의 날 운영 내용 결정하기  ◇ 생일잔치,장기자랑,요리활동,알뜰시장,학급 골든벨, 보드 게임의 날, 공동체 놀이 중에서 선택하기 - 다양한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학급야영 모둠별 요리대회, 장기자랑, 생일축하, 공동체 놀이 등을 한 후에 도서관에서 책 읽는 활동도 하고 싶음.  ◇ 학급 야영에서 모둠별 요리활동을 위한 모둠구성 - 하고 싶은 요리를 조사해서 같은 요리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구성  ◇ 학급 야영 준비를 위한 역할 - 준비물은 모둠별로 준비하고 장기자랑은 신청자 받기 - 행사 코너별로 책임자를 정하기 특히,요리대회,장기자랑,생일축하,공동체 놀이,						
결정 내 <del>용</del>	◇ 학급의 날 학급야영으로 운영 ◇ 행사 코너별로 책임자를 정하고 준비 및 정리는 함께하기						
기타 토의	◇ 부모님의 동의를 있도록 도와주기	◇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친구가 생기면 연락해서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차기 회의	<ul><li>◇ 다음 회의 날짜 안내</li><li>○○안건에 대해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li></ul>						



- 학급 야영 계획하기
  - 학급잔치 준비 절차

학급잔치 계획하기 가정통신문 알림장

사전 안전교육 실시

학급잔치 ▶ 소감나누기

## 학급 야영 계획서

일 시 : ○○○○년 ○월 ○○일(금) 16:30 ~ ○월 ○○일(토) 11:00

장 소 : 본교 운동장 및 교실, 도서관

참가대상: 학부모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지도교사: 〇〇〇

숙영방법: ○-○ 교실 (개인 침구 준비)

취사방법: 모둠별 공동취사

학생준비물: 필기도구, 세면도구, 침구, 식기, 모둠별 식사 준비물, 개인

비상비약, 여벌옷(체육복 등)

붙임1. 세부 일정

붙임2. 소감문

붙임3. 가정통신문

붙임4. 학생안전사고 예방지도



## <붙임 1> 세부일정

날짜	시간	야영 일정	장소
	16:30~17:00	준비물 점검 및 안전교육	교실
	17:00~18:00	공동체 놀이	강 당
	18:00~19:30	저녁 식사(모둠별 요리대회)	
○월 ○○일(금)	19:30~21:00	장기자랑(나눔, 친교 시간)	교실
	21:00~22:00	생일축하, 간식 및 휴식	교실
	22:00~23:00	올빼미 되기(책읽기)	도서관
	23:00~	취침(책 그만 읽고 싶을 때까지)	
	08:00~08:30	기상 및 세면	
	08:30~09:30	아침식사	
○월 ○○일(토)	09:30~10:30	소감나누기,담임과의 대화	
	10:30~11:00	주변 정리 및 청소	
	11:00~	귀가	

## <붙임 2> 소감문

학급 야영 소감문					
	(	)학년 (	)반 (	)번 이름 (	)
학급 야영 활동 내용과 느낀 점을	· 적어봅	를시다.			



## 7. 학급규칙 만들기

## 단계 세부 진행 내용 11 학급규칙 제정 ○ 학급규칙 제정의 필요성과 유의사항에 대해 학급자치회의 공지 ○ 학급의 상황과 특징 파악 $\overline{\prod}$ ○ 설문조사 실시 ○ 모둠별 소집단 회의 의견 ○ 학급게시판을 활용한 포스트잇 회의 ○ 학급 홈페이지, SNS게시판에 의견 제안 제안 .수렴 - 학급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학생 전체가 함께 참여 하도록 유도한다. $\downarrow \downarrow$ 학급규칙 ○ 의견 수렴 후 학급규칙안을 작성하여 학급게시판에 게시 하고, 학급 구성원들에게 검토 기회를 제공한다. 초안작성 11 ○ 여러 차례의 학급자치회의를 통해 학급규칙에 대한 충분한 토의,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급규칙 ○ 학급규칙 위반자 지도 방법을 학생 스스로 만들도록 하고, 제정을 위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학급회의 - 정규 자치활동시간, 조.종례시간, SNS단체채팅 등을 활용 ○ 학교규칙에 어긋나는 학급규칙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1 ○ 학생들과 교사들이 볼 수 있도록 학급규칙을 교실게시판에 학급규칙 게시하다. 홍보 - 가정통신문,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에게 학급 규칙을 알린다. 1 실천 ○ 학급회 구성원의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모두가 노력한다. $\downarrow \downarrow$ ○ 학급규칙 운영 후 발생하는 문제에 따라 규칙 개정이 필요 수정.보안 하면 언제라도 학급회의를 통해 다시 결정한다.



## 학급자치회규정(안)



## 학급자치회규정 (안)

- 제1조(명칭) 이 회는 〇〇〇〇학교 학급자치회라 한다.
- 제2조(구성) 학급자치회는 당해연도 학급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목적) 학급자치회 활동을 통해 민주시만의 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 제4조(권리와 의무) 이 회의 회원은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① 학급자치회 활동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다.
- ②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된 학교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 제5조(임원 구성) 학급자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서기1인, 학생회 에 준하여 총무부장, 문화 · 예술부장, 바른생활부장, 도서부장, 체육부장, 봉사부장으로 구성하여 유영하다.
- 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② 회장과 부회장은 1학기 3월, 2학기 9월에 학기별로 선출한다.
- ③ 임원 궐위시에는 1주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후임자는 잔여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 제6조(임원 선출) 회장과 부회장은 학급자치회 구성원 전체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학교장 이 임명한다.
- 제7조(임원의 임무)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자치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에는 의장을 대리한다.
- ③ 각 부서의 부장은 학생회 운영위원회 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 제8조(협의 및 의결) 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의결하다.
- ② 담임 및 부담임 교사는 학급자치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학급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① 정기회의는 학교교육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기초하여 실시한다.
- ②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 과반수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TIP

학급규칙을 정할 때 모둠별 토론을 통해 공통된 내용을 정하는 방법, 포스트잇에 개인별 의견을 적어 게시판에 붙이고 비슷한 의견을 분류한 후 스티커를 붙여 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 Ⅱ. 학생회 선거

## 1. 단계

단계	세부 진행 내용
	세루 선형 내용
<u></u>	
사전준비	<ul> <li>선거일 확정(전년도 미리 선출하여 인수인계 완료), 투표방법 결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교육</li> <li>학생회(학급회) 운영계획 수립, 선거 일정 확정 및 공지</li> <li>후보자 등록방법 결정(회장/부회장, 러닝메이트 등)</li> <li>투표방법 결정(종이투표, 전자투표, 인터넷투표 등)</li> <li>공고일 전에 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역할 등 교육 실시</li> </ul>
$\downarrow$	
D-15일까지	• 선거일 공고, 선관위원 공고, 공명선거 협조문 게시 및 발송
$\Box$	
D-12일까지	후보자 등록 및 공고, 선거운동 준비, 기호 결정
<u></u>	
D-11일부터 투표 시작 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downarrow$	
D-10일까지	후보자 홍보 포스터 게시
$\Box$	
D-2일까지	토론회, 합동、개인 소견발표회.
<u></u>	
D-1일까지	투·개표 준비, 투표용지 제작, 투·개표 참관인 신고 등
<u></u>	
D (선거일)	투표자 명단 확정, 투·개표 관리, 당선인 결정 및 발표
$\downarrow$	
D+3일까지	이의신청

## 2. 공약 만들기

좋은 공약이란 학교생활을 개선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하며, 자신의 힘으로 친구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공약 (매니페스토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공약」만드는 절차		
학교 개선 사항 찾기	학교의 미래상과 학생들의 요구(여론 조사 등) 고려	
해야 할 일 정하기	학교의 문제와 해야 할 일을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만들기	
해결 방법 찾기	학교 여건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공약 설정	
최종공약 선정	학생들의 요구와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 확인	

##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공약의 예 (단위 학교 사례)

- ① 학교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심 우산'을 운영하여 갑자기 비가 온 날 학생들이 빌려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함
- ② 점심시간 운동장 사용 안전 지킴이 활동을 실시하여 교내 안전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 선생님, 담임 선생님과의 연락 그물을 구성함
- ③ 점심시간에 상담실을 이용하여 '대화가 필요해' 코너를 만들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나 후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주적인 집단 상담을 통해 오해를 푸는 장(場)으로 활용함
- ④ 방송 시간에 분실물 상황을 알려 잃어버린 물건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바꾸어 쓰거나 나누어 쓸 수 있는 물건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하여 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
- ⑤ '약속의 장소'를 만들어 등교 후 부모님 등을 만나야 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⑥ 자전거 이용 시 헬멧이나 무릎 보호대를 가져오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수호천사 대여소'를 마련함
- ⑦ 학생회 주최 진로체험의 날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직업(학부모, 지역 인사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함



## 3. 선거운동

후보자 홍보 포스터 제작·부착	•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 마감 다음날 게시판, 복도 등 학생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모든 후보자의 포스터를 기호 순으로 붙임
선거용품의 제작 및 활용	•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자유로이 선거용품(어깨띠·피켓·기타 창의적인 선거용품)을 활용하여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자체 제작이 가능한 용품 위주)
토론회 및 합동 소견발표회 개최	<ul> <li>후보자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 1일 전, 토론회나 합동 소견발표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함</li> <li>전교생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고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즐겁고 창의적인 축제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별도의 계획을 수립)</li> <li>토론회나 합동 소견발표회는 모든 학생이 청취할 수 있도록 대강당이나 교내 방송망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발표순서는 추첨에의함</li> <li>후보자는 공약 외의 약점으로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도록 하며,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도록 하고, 소견 발표 중 다른 학생을 비방하거나 선심성 공약을 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고 주의를 주어야 함</li> </ul>

## • 학생회장 선거 TV 합동토론회 순서

구분			진행방식	
토론개시		기조연설	후보자의 자기소개, 출마소감, 핵심공약 등	
		사회자 질문	사회자가 후보자에게 공통(개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 (위원회에서 질문 작성)	
		유권자 질문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공통(개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 (유권자가 직접 질문을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선정) ※ 청중이 있을 경우 토론회 현장에서 직접 유권자(청중) 질문도 가능함	
질문	질문 (문제제기)	후보자 질문 (후보자 상호토론)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	
본 토 론	주체별	후보자 주도권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후보자가 일정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	
-		후보자 자유토론	후보자별로 주어진 시간 총량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	
		후보자 공약발표 후 토론	후보자의 공약발표 후 발표내용을 주제로 후보자간 토론하는 형식	
		혼합형	사회자 질문에 후보자 보충 질문 혼합	
	지무청시	개별질문	후보자 별로 각각 다른 내용으로 질문	
	질문형식	공통질문	모든 후보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질문	
E	토론종료 맺음말 유권자에 대한 지지호소, 토론내용 정리보완 등			

TIP

학생회 선거는 학교 사정에 따라 달리 실시될 수 있겠지만, 학교 예산 편성 과정에 학생회가 참여 하여 다음해 학생회 활동을 주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해 예산편성계획이 수립되는 10~12월 경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Ⅲ. 학생회

## 1. 학생회의 개념

- 학생회는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학생자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총회, 학급자치회, 대의원회, 학생회 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 총체적인 학생 모임을 말한다.

## 2. 학생회의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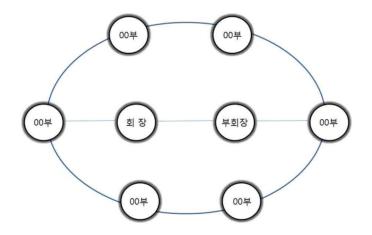
종 류	역 할
학생총회	구성 : 재학생 전체 / 의장 : 학생회장 역할 :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기타 학생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 토의·의결
학생회 (학생운영 위원회)	구성 : 총회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생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한 각부 부장 역할 : 학생회 운영,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과 심의 · 의결한 사항 추진, 학생자치활동 예산안 편성 및 집행 등 업무수행
대의원회	구성: 학생회(학생운영위원회) 임원 및 학급대표 / 의장: 학생회장역할: 아래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 - 학생 총회 소집, 학생회 운영계획, 학생자치활동 예산운영(안) - 대의원 및 학급회의 건의사항, 학생회(학생운영위원회)에서부의한 안건, 학생생활 규정 제·개정을 위한 학생들의 의견수렴 및 심의
학 급 회	구성 : 각 학습 재학생 전체 / 의장 : 학급회장 역할 :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특색 사안 등을 협의 · 의결
기 타 (동아리 연합회 등)	구성 : 각 동아리 회장 / 의장 : 동아리연합회 회장 역할 : 동아리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학교에 전달, 동아리 축제 등의 기획 및 추진



## 3. 학생회의 역할 및 권리

영역	내 <del>용</del>
역할	<ul> <li>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과 심의、의결한 사항 추진</li> <li>학생회 활동 예산 편성、집행 등의 업무 수행</li> <li>학생의 의견、요구를 수렴하여 대변</li> <li>학생의 인권과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li> <li>축제 및 학교행사를 능동적으로 기획 및 추진</li> <li>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 기획 및 추진</li> <li>민주시민으로서 자율과 책임이 존중되는 문화 조성</li> </ul>
권리	<ul> <li>구성: 총회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생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한 각부 부장</li> <li>역할: 학생회 운영,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과 심의 '의결한 사항 추진, 학생자치활동 예산안 편성 및 집행 등 업무수행</li> </ul>

## 4. 조직 및 역할



- 회장 : 학생자치활동 총괄,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및 대의원회의 주관
- 부회장 : 회장과 함께 학생자치활동 운영,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및 대의원 회의 운영
- 기획부 : 학생자치활동 관련 각종 기획, 학생회 회의록 작성 등
- 문화예술부 : 학생자치회 행사 추진(체육대회, 축제, 친구사랑의 날 등)
- 홍보부 : 학생자치회 소식지 발간과 학생자치회 사업의 대내외 홍보활동 등
- 체육부 :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스포츠 클럽활동 활성화 의견 반영 등
- 봉사부 : 학교 내 · 외 봉사활동 추진 등
- 학생인권부 :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사항과 학생복지 향상을 위한 의견 수렴

## 5. 다모임

영역	내용
개념	<ul> <li>'다함께 모인다.'의 명사형으로써 기존의 전교어린이회 기능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혁신적으로 구안된 회의형태이다. 누구든지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학년에 상관없이 소통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학생자치(自治)'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임.</li> <li>학교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학생 자치활동을 학생 다모임이라 하며 학급다모임, 학년다모임, 학급임원 협의회 등으로 운영할 수 있음</li> </ul>
의의	<ul> <li>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안건을 발의하고 해결하는 회의문화를 형성하고, 조직 운영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게 함</li> <li>학생들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학교 행사를 통해 학교자체의 문화를 창조하여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감과 공동체의식 및 창의성을 키우도록 함</li> </ul>

## 6. 학생회 활동 연간운영 계획(예시)

월	주요 활동내용	운영 시간
연중	<ul> <li>월 2~3회 학생자치회 회의실시</li> <li>학생 건의 내용 정리 및 자체행사 기획 회의</li> <li>월 1회 회의 개최 후 교장선생님과의 대화 실시</li> <li>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에 전달</li> <li>각종 봉사활동 및 캠페인 활동 실시</li> <li>에너지 및 전기 절약, 국경일 의미 알리기</li> <li>화장실 사용 에티켓, 교통안전 자원 봉사</li> <li>도움이 필요한 주변 이웃돕기, 학교폭력예방 활동</li> <li>급식실 질서 캠페인, 바르고 고운 말 쓰기</li> <li>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 대토론회 개최(학기별 1회)</li> </ul>	창체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 자기주도 학습시간 학급회의 : 매월 1, 3주
2월	<ul> <li>학생이 중심이 되는 졸업식 기획 및 운영         <ul> <li>획일적인 졸업식문화 탈피, 학교 전통과 특색을 살리는 졸업문화 정착</li> </ul> </li> <li>학생자치회 임원 리더십 캠프         <ul> <li>연간 학생자치회 운영활동 계획 수립, 학생회 역할 알아보기, 전년도 학생자치회 활동 인수인계 / 공유</li> </ul> </li> <li>학생 자치회의실 및 게시판 꾸미기         <ul> <li>게시판 꾸미기, 청소역할 정하기, 자치회의실 공간 구성하기</li> </ul> </li> <li>생학기 신입생 맞이 입학식 기획 및 운영         <ul> <li>학생 임원진이 준비하는 신입생 맞이 축하공연 준비</li> </ul> </li> </ul>	창체시간 점심, 방과후 시간



3월	<ul> <li>신입생 환영행사 개최</li> <li>- 등굣길 인사하기 캠페인, 신입생에게 학교 소개 및 안내하기</li> <li>학생 동아리 홍보 및 조직</li> <li>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친구사랑의 날 행사</li> <li>-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한문화활동(UCC, 연극 등)</li> <li>1학기 학급회、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대의회 조직</li> <li>학교생활규정 재、개정 활동 참여</li> <li>학생 자치회 중심으로 학생들의 의견 설문조사 ➡학교생활규정 재、개정 활동에 참여하여 학생의견 반영</li> </ul>	창체시간 방과후 시간
4월	<ul> <li>학생이 중심이 되는 인권의 날 행사</li> <li>학생인권조례 소개 자료 만들기 및 퀴즈대회 실시, 인권을 주제로 한 문화활동(포스터, UCC, 학교 게시판 꾸미기)</li> <li>과학의 날 행사</li> <li>학생자치회 중심 과학 체험부스 운영</li> </ul>	창체시간 점심시간
5월	<ul> <li>스승의날, 어버이날 행사</li> <li>학생회 주관 부모님, 선생님 초청 프로그램 운영</li> <li>선생님 사랑 사진 공모전, 손사탕 목걸이 제작 등</li> <li>5월 가정의 달 사진 콘테스트 실시</li> <li>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어울림(운동회) 행사</li> <li>프로그램 준비, 진행, 질서 지도, 뒷정리</li> </ul>	5.13~15 창체시간 점심시간
6월	<ul><li>나라사랑 및 통일기원 행사</li><li>통일노래 부르기, 통일 골든벨 행사, 태극기 그리기</li><li>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li></ul>	창체시간
7~8월	<ul> <li>학생자치회 임원 리더십 캠프</li> <li>1학기 학생회 주관 행사 운영 반성 및 2학기 행사 기획</li> <li>여름철 에너지 절약 켐페인</li> <li>텅빈 교실 불끄기, 에어컨 사용 규칙 지켜 사용하기</li> </ul>	창체시간 점심시간 쉬는시간
9월	<ul> <li>2학기 학급회、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대의원회 조직</li> <li>친구사랑의 날 행사</li> <li>학생회가 중심이 되는 친구사랑 주간 캠페인 및 행사 실시</li> </ul>	창체시간 점심시간
10월	<ul><li>학생축제 기획 및 운영</li><li>축제 팜플렛 제작 및 공연 및 기획 준비</li><li>스포츠 동아리 리그전 운영</li></ul>	점심시간 체육시간 창체시간
11월	<ul><li>학생독립운동기념의 날 행사</li><li>사진전 개최, 동영상 제작 및 상영, 프리허그 행사 실시</li></ul>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
12월	<ul><li>학생들이 만드는 학교 소식지 제작</li><li>학생자치활동 운영 평가 및 차년도 학생예산 편성 협의회</li></ul>	창체시간

## 7. 학생회 임원 연수

<예시> 2016 고등학생 자치활동 역량강화 캠프 순서

1. 일시 : 2016. 11. 18.(금) 15:00 ~ 2016. 11. 19.(토) 14:00(1박2일)

(집결 15:00 전라북도교육청 주차장)

2. 장소 :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3. 대상 : 도내 고등학교 학생회 회장단 60명

4. 일정표

시 간	내 용	진행			
	1일차 (11월 18일 금)				
14:50 ~ 15:00	집결(전라북도교육청 주차장)	정옥진(교사)			
15:00 ~ 16:00	도착 및 방배정	이창수(장학사)			
16:00 ~ 16:50	자기소개 및 분임 나누기 (학생회 고민 나누기)	이창수(장학사)			
16:50 ~ 17:00	휴식				
17:00 ~ 18:00	교육감 특강				
18:00 ~ 19:00	저녁식사 및 휴식				
19:00 ~ 20:30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회의 역할	○○○ (○○고 교사)			
20:30 ~ 20:40	휴식				
20:40 ~ 22:00	쟁점 토론(예, 선도부 역할)	이충민(조사관)			
22:00 ~ 22:10	휴식				
22:10 ~ 23:00	학생자치활동 사례 분임토의	이창수(장학사)			
23:00 ~	간식 및 취침				



시 간	내 용	진행	
2일차 (11월 19일 토)			
08:00 ~ 09:00	기상 및 아침식사		
09:00 ~ 10:00	학생회가 주도하는 행사기획의 실제1	정옥진(교사)	
10:00 ~ 10:10	휴식		
10:10 ~ 11:30	학생회가 주도하는 행사기획의 실제2	정옥진(교사)	
11:30 ~ 11:40	휴식		
11:40 ~ 12:00	캠프 평가 및 반성 이창수(장학		
12:00 ~ 13:00	이 점심식사 및 버스 탑승		
13:00 ~ 14:00	전라북도교육청 도착 및 해산 이창수(장학사)		

<sup>\*</sup> 행사시정이 당일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5. 소요예산

항목	세부 지출내용	지 <del>출금</del> 액	비고
연구활동비	강사비 원고료 교재비 간식비 식비 숙박 세미나실 버스비 여행자보험 단체티	원	

## TIP

학생회 임원 연수 시 전년도 회장단과 인수인계를 하면서 학생회의 성찰 및 학생들 의견수렴을 통해 차기년도 계획 수립을 세우는 것도 방안과 인근 학교 학생회와 연계해서 상호 학교의 좋은 사례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천함

## IV. 학생회 회의 진행

#### 1. 회의 용어 사용법

#### 가. 의안의 발의

- 대표가 회의 발언 안건을 올린 이유를 설명하고 회의 의제로 상정함.
- ○○○의원이 제출한 의안(문서로 대표에게 제출)에 ○○○ ,○○○, ○○○, ○○○이 한성하여 문서로 제출하였으므로 의제로 상정합니다."라고 선포함.

#### 나. 토론



- 질문은 잘 모르는 것만 해야지 질문의 형식을 빌려 반대 의견을 말해선 안됨.
- 토론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교대로 발언시키는 것이 중요함.
- 원 동의에 대체로 찬성하지만 그 내용을 좀 수정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을 때는 수정동의를 할 수 있음. 이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면 즉시 질문을 하고 토론에 들어감.
- 수정 동의에 대해 재수정안을 낼 수 있으며 이때 표결 순서는 **재수정안**, **수정안**, **원안** 순임
-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제안자 의 최종 결론 발언을 시키는 것이 좋음

#### 다. 표결

- 재수정동의안, 수정동의안, 원동의안 순으로 표결합니다. 회의장에 없는 위원은 표결에 참가 할 수 없고, 표결에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 표결 시에는 어느 한 쪽에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하고, 한번 행한 표결은 어떠한 이 유로도 정정하지 못합니다.
- 표결안이 출석의원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와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합니다.



## ※ 주요 회의 용어

회의 용어	의 미	
개회(開會)	회의를 시작하는 것	
동의(動議)	의안을 제안하는 것	
동의(同意)	제안된 의안에 찬성을 표하는 것	
재청(再請)	다른 사람의 동의(動議)에 찬성하는 것	
수정동의	동의(動議)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내용의 일부를 고쳐서(수정안) 의견 을 제시하는 것	
개의(改議)	다른 사람의 동의(動議)를 수정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재개의(再改議)	개의 사항에 전반적으로 수정제의를 하는 것	
정족수(定足數)	의사를 진행시키거나 의결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	
폐회(閉會)	회의를 마치는 것	

## 2. 발표할 때의 요령

구 분	발 표 내 용	
처음 의견	~은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입니다.	
보충 할 때 의견	~의 의견에 보충하겠습니다. 저는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기 때문 입니다.	
수정 의견	~의 의견도 좋지만 또는 ~는 ~라고 했는데 ~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 의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할 때	~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 3. 회의의 원칙

원칙	내용	
회의 공개의 원칙	회의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야한다.	
정족수의 원칙	회의에서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참석자가 필요하다. ▶의사정족수:회의성립시 필요한 최소한의 수 ▶의결정족수:회의에서 의사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	
발언자유의 원칙	누구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의장의 허락 없이 발언을 하거나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폭력배제의 원칙	회의에서는 어떠한 폭력도 허용되지 않는다.	
의원평등의 원칙	모든 의원은 누구나 똑같은 책임을 가기 때문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소수의견의 존중	다수결의 원칙이 의사결정의 절대 원칙은 아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의사결정 전에 충분한 토의 과정이 필요하다.	
과반수 또는 다수결 원칙	회의에서 하나의 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다수결에 따라야 한다.	
1의제의 원칙	회의에서는 한 번에 한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어야 한다. 의장이 한 의제를 상정하기로 선언한 다음에는 토의와 표결이 결정될 때까지 다른 의제를 상정 할 수 없다.	
일사부재의 (一事不再議)의 원칙	회의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의(회기)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1회1인발언의 원칙	회의에서는 한 사람씩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야한다. 찬성과 반대 토론의 경우 의장은 찬성과 반대 양측이 번갈아 발언하도록 발언권을 주는게 바람직하다.	



## 4. 학생회의 진행 모형

순 서	단 계	진 행 구 조	세 부 내 용
1	개회선언	"지금부터 제( )회 학 생대의원회를 시작하 겠습니다."	<ul><li>① 사회: 사회는 부대표가 맡아서 진행하며, 주로 진행 순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li><li>② 개회 선언: 대표(의사봉 3타)</li><li>③ 개회 전에 각종 준비물을 확인한다.(의사봉, 회의록, 회의자료 등)</li></ul>
2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 국가 제창	① 사회자가 진행
3	의장 인사	인사말(최근 학생들의 관심사, 중요한 학생회 일, 학생회를 믿고 협 조한 대의원 활동에 대한 감사 등)	① 대표는 중요한 보고 사항을 보고한다. ② 본 회의 시 핵심 시항을 알려주며 당부의 말을 전한다. ③ 모든 위원들이 의안 해결을 위해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인사말을 한다.
4	보고	의안 실천 결과보고, 기타보고 등	① 대표가 진행 ② 서기는 지난 ()회 회의록을 보고한다. 보고된 회의록은 수정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한다. ③ 지난 회에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부서장 및 담당자는 반성을 포함하여 평가 차원의 보고를 한다. ④ 기타 운영위원의 반성 및 평가, 보고까지를 포함하여 의장이 총평한다. ※ 필요시 의장이 대의원(학급학생) 다수의 동의를 받아 간략히 구두 보고하거나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다.
5	의안 보고 및 채택	의안 보고 및 채택	① 학생회운영위원회, 대의원회에서 채택된 의안을 보고한다. ② 학교에서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의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③ 의원들로부터 의안 동의(同議)가 있으면 재청을 받아 채택한다. ④ 의안제안자의 설명을 듣는다. 제안자는 의안의 중요성과의안과 관련된 실태, 바라는 바 등을 설명한다. 제안자는 찬성, 반대 입장을 고려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교에서 제시한 의안일 경우 해당 학생회 부서장 혹은의장이 제안을 설명한다. ⑤ 의안은 절실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 가능한 것을 채택한다. ⑥ 대표는 적절하지 못하게 동의(動議)된 안건은 기타 토의나건의 사항으로 분류하여 논의한다.

6	의안심의	채택된 의안 심의	① 대표가 의안을 상정(上程)한다. ② 제1호 의안:
7	기타 토의 및 건의	기타 사항을 토의	<ol> <li>본 회의 의안(議案)과 관련되지 않은, 시급히 토의할 사항을 처리한다.</li> <li>없으면 그대로 넘어간다.</li> <li>시급한 문제, 건의하여 해결될 사항을 다룬다.</li> <li>필요시 담당교사와 학교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li> </ol>
8	회의록 낭독	보고 및 결의된 사항 낭독	① 서기는 회의와 관련된 일체의 기록을 책임지며, 본 회의에서 보고되었거나 결의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여 위원들에게 승인을 받는다.
9	도움말	지도교사의 도움말	① 필요 시 지도교사는 회의 진행, 의사결정방법, 기타사항에 도움말을 할 수 있다.
10	교가제창	제창	교가제창
11	폐회선언	이상으로 제( )회 학생대의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① 대표가 폐회를 선언한다. (의사봉 3타) ② 대의원 모두 박수로 마친다.

▶ 약식절차 : 개회선언 - 의안보고 및 심사 - 의안 심사 - 기타 토의 및 건의 - 폐회선언



## 5. 회의에 임하는 자세

영역	내용
의장의 자세	<ul> <li>회의의 대표자로서 회의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li> <li>모든 회의의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면서도 의사 처리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해야 한다.</li> <li>부드럽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모든 의원들이 고루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li> <li>회의규칙에 대하여 잘 알아 두어야 한다.</li> <li>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준비해야 한다.</li> <li>의장은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제안하거나 토론에 참가할 수 없다. 의장이 동의 제안이나 토론에 참가하려면 임시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평의원의 자격으로 발언해야 한다.</li> </ul>
대의원 (회의참석)의 자세	<ul> <li>회의의 규칙과 민주적인 회의 진행법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li> <li>어떠한 의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과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li> <li>회의 진행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토의할수 있어야 한다.</li> <li>자기의 발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li> </ul>

## • 학생회 회의록 양식

출석인원	서기	부회장	회장	회의장소
명				
회의일시	○○년○월○일	회의시간		
토의 안건	▶ 1호 의안 ▶ 2호 의안			
제안설명		OO 제안자 제안 설 O 제안자 제안 설명		
토의내용	▶ 1호 의안 ▶ 2호 의안			
질의내 <del>용</del>				
결정내용	▶ 1호 의안 ▶ 2호 의안		투표 1호 의안 : 찬성( 명) 반대( 2호 의안: 찬성( 명) 반대(	
건의 기타사항	① ② ③ ④ ⑤(차기 회의 안L	배 등)		



• 건의 및 제안서 양식

## 건의 및 제안서

1.건의(제안)자 (□개인/ □단체)

성명	학년 반	서명	성명	학년 반	서명

- 2. 건의(제안)하는 내용
  - 건의(제안)의 개요 (\* 제목)
  - 현재 상황(\* 문제점 및 건의 혹은 제안 이유)
  - 해결 방안(\* 구체적 대안, 실현 가능성, 명확성)
  - 예상 비용 및 기대 효과

년 월 일

학교학생회장 귀하

## 5. 다모임 회의 진행순서

## • 예시1

내용	멘트	예상 시간
개회 명상	- 1분 동안 명상을 하면서 2015년 첫번째 다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1분
생일 축하 시간	<ul> <li>먼저 서로 더욱 정을 나누고자 생일 축하시간을 갖겠습니다.</li> <li>3월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다같이 이 친구들을 위해 생일축하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생일 노래 부르기)</li> <li>다시 한번 생일을 축하합니다.</li> </ul>	2분
<del>긍</del> 정의 힘	- 이번 순서는 긍정적인 말을 통해 서로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긍정의"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같이 "힘!"이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힘!" 생활 속에서 좋았던 경험이나, 칭찬을 해주고 싶은 친구, 선배, 후배가 있다면 손을 들고 발표해 주십시오. (2-3명만)	2분
두레소개 : 자기소개, 두레이름 짓기, 두레구호 만들기	- 2015년에는 친구들 사이뿐만 아니라 선후배 사이가 돈독한 왕북초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두레가 조직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모임을 할 때마다 두레별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을 것이며, 여러 학교 행사 때에도 두레별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6학년 학생들이 두레의 장이 되어 두레를 잘 이끌겠으며, 후배들에게 먼저 본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서로 인사를 나누고, 두레 이름 짓기, 두레 구호를 만들어주십시오. (15분 - 20분 후) 두레별로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 다 한 후에 잠시 쉬는 시간!)	30분
이달의 주제토론	- 이번달 주제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함께 토의할 주제는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는지, 학교가 어떻게 변하면 매일 학교에 오고 싶을 것 같은지 두레별로 토론하여 주십시오. 3월 주제 :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30분
기타 토의 사항	- 주제 토론을 마치고, 기타토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선생님, 친구들에게 건의할 사항이나 말하고 싶은 사항, 고민거리가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표 주십시오. (만약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다음 다모임 시간에 서로 토의하겠습니다.)	4분
폐회	- 광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다모임을 마치고, 운동장에서 두레별로 놀이를 하겠사오니 다모임을 마친 후에 잠시 쉬었다가 모두 운동장으로 나가주십시오. - 이상 박수로 다모임을 마치겠습니다.	1분

준비물 - 흰색칠판, 지우개, 보드마카, 명상용 카세트, 명상용 CD, 스피커, 마이크, 교사용 의자 8개 준비



#### 예시2

## 0월 다모임 시나리오

준비사항: 마이크 두 개, 기타, 보면대, 도화지 7장, 매직, 생일선물, 간식, 확성기, PPT

000: 지금부터 0월 전교 다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약식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정면에 있는 국기를 바라봐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음악~~~~ 끝나면) 바로!

000: 0월 생일이신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누구,누구,누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00, □□, △△) 가지고 있던 고깔 모자를 전해주거나, 씌워 준다.) 기타 반주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000 선생님 기타 반주) 생일축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노래 끝)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물들이 숨어있을까요?^^

(000, 000 선물 준비 및 증정)

다시 한번 큰 박수로 0월 생일이신 분들을 축하합시다.

000 : 이번 시간은 마음의 소리 "야호"란 시간입니다.

제가 "마음의 소리"하고 외치면 여러분이 크게 야!호!라고 외치면 되는 겁니다.

연습한번 해볼까요? 자~준비됐죠. "마음의 소리" "야! 호!"

네~ 아주 잘하시는군요. 이 마음의 소리 시간은 친구나 선생님이나 학교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자유롭게 1분 동안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솔직한 마음을요.

그렇다고 상대방을 비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고마웠던 일들, 서운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 하며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모임에는 다모임지기인 000 학생과 제가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외치면 여러분이 야호를 외치며 시작하도록 할게요.

"마음의 소리" "야! 호!" (배경음악)

마음의 소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각 반 다모임 지기들에게 언제든 신청해주세요.

000: 지금 우리는 1~6학년, 선생님까지 7개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은 한 학기동안 함께 할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둠 안에서 형, 누나들은 동생들을 돌보고 돕고, 동생들은 잘 따라서~ 함께 다모임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족별로 할 활동은 가족의 이름과 구호를 정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의미있고 재미있는 이름과 구호를 만들어주세요. 시간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한 후) 다 완성하셨으면 가족별로 일어나 이름과 구호를 발표해보겠습니다.

000 : 가족별로 간단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예시3

## 0월 다모임 시나리오

제 회 전교 다모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

주제 토의: 주제토의는 00초등학교의 주인인 여러분이 스스로 학교 내 문제를 찾아보고 그 해결 방법이나 건의할 내용들을 생각하고, 토의한 후 가장 합리적이고 나은 방법으로 학교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하시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다. 토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모임 주제

1.

2.

3.

- 💍 나온 이야기
- 🧷 결정된 사항
- **び** 건의사항

## V. 학생중심 학교 행사 기획

## < 사례 1 >

## 00초 학생회 주최 체육대회

## ★ 목적

학생들 스스로 준비하고 집행하는 행사로서 학급 간 단결을 도모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함

## ★ 대상

○○초 5.6학년 (4학년의 경우 협의 후 추후 실시 예정)

## ★. 종목

반 대항 축구, 피구

#### ★ 경기 방법

- ① 체육시간을 활용하여 대진표를 작성하여 진행함
- ② 심판은 6학년은 체육교사 및 담임, 5학년은 학생회 집행부
- ③ 리그전 진행. 각 경기 승리 시 3점, 무승부 1점, 패배 0점. 종합점수로 순위 산정

## ★. 경기규칙

① 축구

전 후반 각 15분, 중간휴식 5분. 참가인원 11명. 선수교체 무제한

② 피구

3판 2선승제.

경기시작 전 미리 나와 있는 사람(학생들 표현으로는 군사) 없음, 플라이볼 잡을 시한사람 구제 없음, 카운트 없음, 전원 아웃 시 경기 종료. 3번째 경기 시 시간관계상 5분 제한시간 안에 남은 사람이 많은 반 승리로 결정할 수 있음

## ★ 상품

1.2등- 설레임, 초코파이

3,4등 - 설레임

## ★ 대진표 (시간표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학년	시간	21일(화)	23일(목)	28일(화)	
6학년	1-2교시	6-1/6-2	6-2/6-3	6-1/6-3	
0 % T.	3-4교시	6-3/6-4	6-1/6-4	6-2/6-4	
		20일(월)	22일(수)	24(금)	
	1교시	5-3/5-4	5-2/5-4	5-1/5-4	
5학년	3교시	5-1/5-2	5-3/5-1 (2교시에)	5-2/5-3	
	1교시	학생회 집행부	학생회 집행부	학생회 집행부	
5학년 경기 심판	112/	학생회 집행부	학생회 집행부	학생회 집행부	
학생(6학년학생 회집행부)	집행부)	학생회 집행부	학생회 집행부	학생회 집행부	
	3교시	학생회 집행부	학생회 집행부	학생회 집행부	

## < 사례 2 >

## 00초 친구사랑 주간 운영

각각의 두레별로 친구사랑 주간에 하고 싶은 활동을 이야기 나누며 계획을 세운 후, 다 모임에 모여 의견을 나누며 친구사랑 주간에 할 활동을 정한다.

## 목표 : 2학기 친구사랑 주간에 함께 더욱 즐겁게 지내면서 정을 나누기

싶나요? (예, 현장학습을 가고 싶어요.)	1	1. 악교에서 시간표내로 공무하는 악생 여러문에게 여러문만의 시간을 준다면 무엇을 혀	十二
		싶나요? (예, 현장학습을 가고 싶어요.)	



2. 1에서 가장 ~ 제일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세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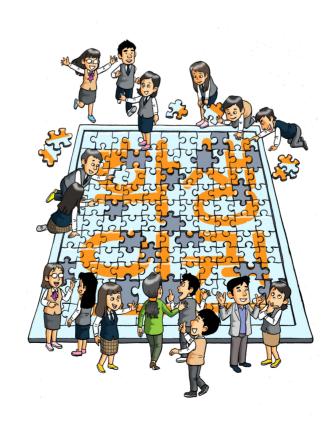
누가?	OO초등학교 학생들끼리 (선생님들은 함께 도와줄게요.)
왜?	선후배끼리, 친구끼리 정 쌓을려고
언제?	요일(8월 마지막 주)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세요.)	

3. 다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와 교사협의를 통해 친구사랑 주간 활동 계획을 세운다.

구분	활동명	활동내용	비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b>토론 및 토의</b> - 대상 : 전교생 - 시간 : 5교시 - 장소 : 다목적실, 영어실	
월 (8.29)	다모임	교원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연수 실시 - 대상 : 전교원 - 시간 : 3시 30분 ~ 4시 30분 - 장소 : 교무실 - 내용 ①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통한 학교폭력예방법 ② 2016년 2학기 친구사랑주간 운영 계획 준비	
화 (8.30)	학교폭력 예방교육	담임선생님과 함께 하는 <b>학교폭력 예방 교육</b> - 대상 : 전교생 - 시간 : 학급별 창체 시간 활용 - 장소 : 각반 교실 - 내용 : ① "멈춰제도" 재확인 및 실천 약속 ② 학급별 평화규칙 재확인 및 실천 약속 ③ <u>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u>	인성.인권 교육 1시간 (9/19에 계획된 2시간 중 1시간)
수 (8.31)	두레별 협력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b>두레별 놀이</b> - 대상 : 전교생 - 시간 : 1교시 ~ 4교시 - 장소 : OO어린이회관 실외놀이터	1교시 : 체육-1시간 (8/31공동체놀이) 2교시 : 인성인권교육 -1시간 (9/19에 계획 된 2시간 중 1시간) 3,4교시 : 스포츠데이 - 2시간 (9/23에 계획 된 스포츠데이 2시간)
(8.31)	두레별 나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b>두레별 나들이</b> - 대상 : 전교생 - 시간 : 5교시 ~ 8교시 - 장소 : OO빙상경기장	5교시 ~ 8교시 : 두레별 나들이 4시간 (9/20에 계획된 4시간) -> 반별시간표에는 인성인권 교육 2시간, 학교폭력예방 교육 2시간으로 입력
	두레별 야영체험	함께 먹고, 놀며 친해지는 <b>두레별 야영체험</b> - 대상 : 전교생 - 시간 : 오후 4시 30분 ~ 오후 9시 - 장소 : 학교	

## 부록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3. 6. 25.)에서 의결된 전라북도학생인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전라북도교육감 2013년 7월 12일

전라북도 조례 제3781호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학교"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 2 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 또는 유치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투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3. "교직원"이란「초.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유아교육법」20조제1 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과 그 밖의 사람으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5. "학생의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조약과 국 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다.
  -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 스스로가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학생의 인권

#### 제1절 교육에 관한 권리

-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근거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7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절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 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에 대한 권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있다.

##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비,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 는 아니 된다.
- 제17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 2. 학교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 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야 한다.
-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 야 한다.

##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 제21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 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정비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와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유·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절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옹호 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④ 인권옹호관 및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청구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흉

#### 제1절 인권교육

- 제28조(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9조(홍보) 교육감은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 및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31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직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한다.
- 제32조(보호자의 권리와 교육) ① 보호자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교육과 관련하여 교 직원에 대하여 상담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 야 하며,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 제33조(인권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전라북도 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 인권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34조 (인권 모니터링)**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차기 년도 인권실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 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실천계획에 대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6조(학교별 평가와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정기적으로 학교별 학생인권 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7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호

- 제3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 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절 학원 및 대안학교 등에서의 인권보장

- 제39조(학원, 대안학교, 평생교육 등)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나 학생과 같은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을 위한 시설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전라북도 내의「학원의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학원과 대 안학교, 평생학습센터 등 대안 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들 교육기관에서의 인권 보장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5절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

- 제40조(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한 자
  - 4. 전라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 ④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 3. 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
  - 4.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인권옹호관이 제안한 사항
  - ⑥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 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41조(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①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회(이하 '학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생위원회는 교육감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학생위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1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 ④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과 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1.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지원청별로 학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①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두다.
  - ②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43조(인권옹호관) ①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및 인권교육을 위하여 인권옹호관을 둔다. 그 구성 및 권한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② 인권옹호관은 상임 1인으로 하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③ 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44조(겸직금지) ① 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② 인권옹호관은 전라북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 7. 학생 인권교육
  -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 제46조(사무국) ① 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기획.정책의 수립, 인권침해의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을 위한 조직과 인원을 둔다.
  - ③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47조(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이 조례에 합치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 제4장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

- 제48조(지역교육지원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50조(조사) ① 인권옹호관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② 인권옹호관은 제49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와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2013. 7. 12 조례 제37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인권옹호관에 대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인권옹호관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7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Memo	

Memo	

Memo	

Memo	

## 존중과 참여로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





우 54879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874 http://human.jbe.go.kr